

#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07.6



**KDI**

## 차 례

### 동향과 분석

개성공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이석기) / 3

### 경제자료

자금세척방지법, 상업은행법, 중앙은행법 전문 / 18

국제기구의 대북구호활동 및 북한의 식량전망 / 40

미국의 국익, 전략, 정책 / 49

### 부문별 주요동향 (5.1~5.31)

1. 대내경제 / 61

2. 농업 및 식량 / 65

3. 대외경제 / 67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74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85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동향과 분석

### 개성공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이석기(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klee@kiet.re.kr

#### I. 머리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등 다소 주춤하였던 개성공단 사업이 북경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된 이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4월 30일 그 동안 미루어져 오던 본 단지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 공고가 났으며, 분양 신청률이 2.4: 1에 달해 순조롭게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2년 사실상 시작된 이후 많은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건설, 시범단지 및 본 단지 1차 5만평 분양 등을 거치면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2007년 3월말 현재 13,000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월 1,300만 달러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공단 건설에 주력하였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단계 이후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개성공단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잔여부지 분양 이후의 1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및 2단계 이후 개발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개성공단의 현황과 과제

### 1. 현 황

2002년 12월 현대와 토공간에 사업변경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실질적으로 개시된 개성공단사업은 이후 약 2,000억원이 투입되어 부지조성, 통신망 연결, 전력, 용수, 폐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건설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기반시설 건설과 함께 북측과 개성공단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시켜 나갔으며, 그 결과 2006년 12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 15개 하위규정, 13개 남북 합의서, 33개 관리위원회 사업준칙 등 총 62개 규범이 시행중이다. 남측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개성공단지원사업단과 북측 법인이지만 사실상 남측이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관리사무소 등의 기관이 설립되어 지원 및 운영기능을 수행중이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성공단을 국내 여타 산업단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도 하였다.<sup>1)</sup>

2005년에 시범단지 28,000평 분양이, 2006년 본 단지 1차 5만평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4월말 현재 22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5개의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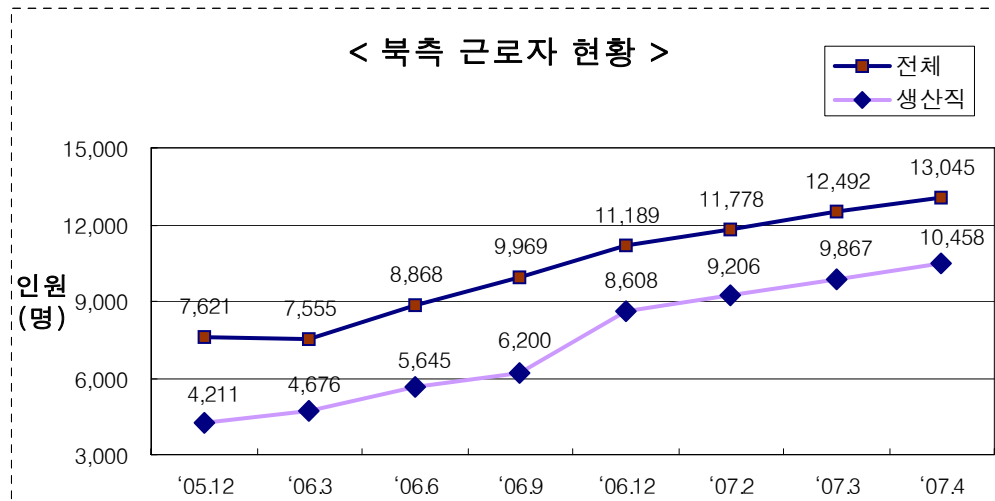
이들 기업에서 2007년 4월말 현재 개성공단은 북측 근로자 13,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생산직 종사자는 전체의 80%인 10,458명이며, 나머지는 현대아산 등의 건설직 및 관리위원회에 고용되어 있다. 전체의 83%가 여성이며, 남성은 17%에 불과하다. 평균 연령은 31.3세이며, 30대가 46%로 가장 많고, 20대(41%), 40대(12%)의 순이다. 2006년 12월에 누적 생산량 1억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월 1,300만달러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섬유가 전체의 절반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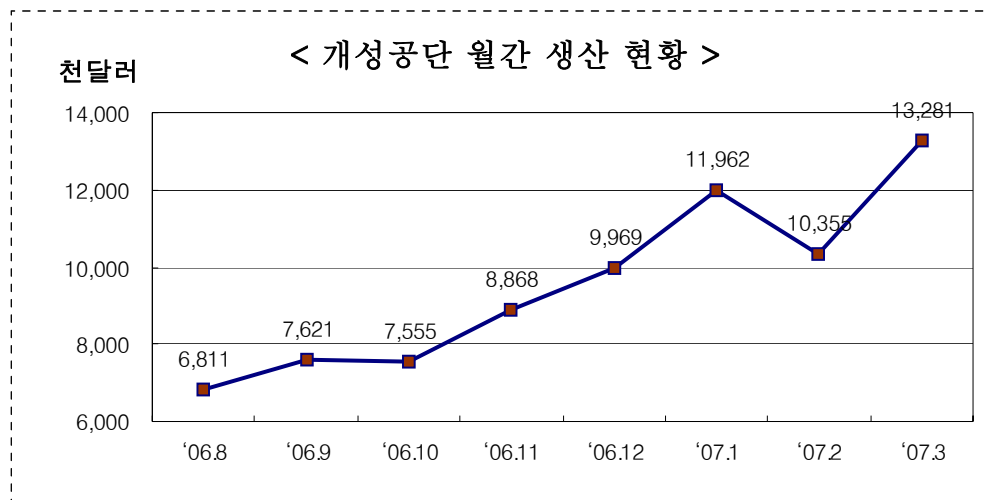
1) 소위 3통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지만 직통 전화가 개통되어 2006년 12월말 현재 303회선이 사용중이다. 통행도 북측 출입신청 처리기간 단축(30일에서 7일)되고, 출입경회수 증가(1일 6회에서 21회)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 무선인식(RFID) 시스템 가동, 출입증체제 전환, 연중상시출입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까운 46%를 점하고 있으며, 기계·금속(23%), 전기전자(18%), 화학(13%) 등의 순이다. 3월말 기준 월 수출액은 310만달러이며, 누적 수출액은 2,900만달러에 달한다.

2007년 5월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전체 141필지에 344개 업체가 지원하여 2.4: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무난하게 분양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통일부



자료: 통일부

## 2. 1단계 분양 이후 과제

1단계 100만평의 기반시설의 건설이 거의 완료되고, 제도적 기반의 구축 작업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의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고, 잔여 부지에 대한 분양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1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고용과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의 노동관리의 제약, 이와 연관된 만족스럽지 못한 생산성 향상 속도, 추가적 비용 지출에 따른 실질 인건비의 상승,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통행, 통신, 통관 절차 등이 자주 거론되는 문제들이다.<sup>2)</sup> 원하는 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3)</sup>

시범단지 및 본 단지 1차 5만평에 입주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상당부분은 초기 단계에 겪는 시행착오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분양이 완료되고 공단이 전면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대두될 과제들이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대처야 말로 향후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노동력 확보 문제이다. 1단계 기업의 입주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할 시기에 필요한 복측 노동자의 수는 대략 7~1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성 및 인근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 규모는 많아야 3만명 수준이며, 나머지는 외지에서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연 복측이 이만한 규모의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외지에서 노동력을 조달

2)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범단지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근거하고 있는 통계들은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공단이 초기 단계이고,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투자로부터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개성공단에 고용된 복측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31세를 넘어섰다. 초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20대 초 중반의 여성 노동력을 주로 고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점차 공급되는 노동력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많은 업체들이 20대 여성 노동력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력의 질적 구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지 출신 노동력의 숙소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sup>4)</sup> 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숙소를, 어디에 건설할 것이며, 건설 및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숙소만이 아니라 노동력의 양과 질, 채용 및 노무관리의 자유,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등 노동력 문제는 1단계 개성공단 사업의 성패를 가름 짓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정부의 대북 협상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노동자 숙소를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될 입주 기업 역시 자체적으로 숙소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한국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이를 매개로 개성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과제들, 특히 노동력의 공급, 채용 및 인력 운용 등에 관련한 북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sup>5)</sup>

다음으로 공단의 조속한 조성에 집중되었던 지원 시스템으로부터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될 입주 기업들이 생산을 위한 각종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이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과정에 투입하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의 형태보다는 경영 컨설팅, 기술지원, 노동자 훈련, 공동 마케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패한 기업의 퇴출과 새로운 기업의 입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시장 확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과제의 하나는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역외가공지역 지정 문제이다. 협정문에 의하면 한미 FTA 발효 1년 후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외가공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9년경에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는 1단계 기업의 입주가 대략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을 시기로 역외가공지역 지정 여부는 입주 기업의 판로 확보에 결정적인

4) 숙소문제는 이미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 양측은 숙소 건설 규모, 방법, 비용부담 등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다.

5) ▲노동력의 공급 규모, 공급 방식, 공급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보장 요구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입주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 선발권 보장 ▲노동자 해고 권한이나 인센티브제도 적용 등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기업 측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정문은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핵문제의 진전, 국제적인 노동·환경 기준의 충족, 남북경협을 진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핵문제의 진전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지만 이는 다른 차원에서 노력할 문제이며, 노동·환경기준 충족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향후 2~3년간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복측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물자의 반출 통제 및 반출된 전략물자의 관리문제도 본격적 입주 시기를 대비해 효율적 대처가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미국의 전략물자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에 따른 전략물자의 반출 통제는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북미 관계의 개선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설비 반출의 제약이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sup>6)</sup>, 제약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개성공단이 예외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입주기업들이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EAR 규제 대상 품목은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규정에 따른 허가 절차를 밟아 최종 사용자와 용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없음을 입증한 다음 수출하라는 것이 EAR을 비롯한 모든 수출관리규정의 정신이다. 문제는 전략물자 반출 허가를 위한 절차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1단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적절한 반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이나 EAR 허가 절차 등을 개별 기업이 아닌 지원기관에서 대행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EAR의 역외 적용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기업의 EAR 허가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허가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반출되는 설비의 용도, 최종 사용자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등 허가의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설비 반출과 반출통제와 반출된 설비의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요의 변화에 따라 종래 통일정책 측면에 경사되었던 정책 기조

6) 현재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산 요소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EAR의 재수출 규정에 따라 미국 상무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북미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등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허가가 필요한 미국산 요소의 편입 비율이 25%로 상향될 수 있다.

를 통일정책과 산업정책, 혹은 중소기업 정책을 조화시키는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체계도 통일부 중심에서 통일부와 경제부처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Ⅲ. 2단계 이후 개발 방향의 정립

총 2,000만평의 부지를 3단계에 걸쳐 개발한다는 것이 개성공단의 공식적인 개발계획인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사업 초기 현대아산의 개발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이것이 마치 정부의 공식적인 개발계획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2단계 이후 개성공단의 개발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합의된 개발계획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단계 분양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2단계 이후의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이에 기초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1. 공적인 개발 계획 수립 필요성

현대아산은 자체의 개발계획인 '개성공단개발총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개발총계획은 개성공단 초기 현대의 개발계획은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발총계획은 민간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사업계획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사 이 계획이 북측과의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서도 계획의 작성이나 확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획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의 경영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면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에 관여하고, 또 향후 개발계획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협력기금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적 사업으로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온전하게 민간자본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어도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검토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할 근거는 미약할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의 이러한 공적인 성격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성공단 개발

목표, 범위, 방식, 속도 등에 대한 정부 자체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현대의 개발총계획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구속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현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정부가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업단지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공공 산업단지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민영 산업단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민영 산업단지는 수요 기업이 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불특정 다수 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민간 기업이 개발한 예는 아직 없었다. 개성공단의 경우 공적 자금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공기업인 토지공사를 통하여 공단을 개발하는 등 전형적인 공적 개발 방식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 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산업단지의 개발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반면 공단개발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이나 혹은 공단지역 내라도 산업단지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업을 현대가 자체의 자금을 통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남북경협에 전반적인 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근거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전반적인 남북경협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개성공단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공단개발 구분과 여타 개발간의 관계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차이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은 그 수혜자가 직접 사업당사자인 현대이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아닌 현대가 자체자금을 통하여 건설하였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한 교류와 접촉 촉진이라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 때문에 공공성을 일부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협력기금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개성공단 개발사업과는 그 공공성의 정도가 다르며, 민간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하다. 개성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산업단지 개발 이외의 사업, 특히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나 남북경협 전반을 위한 사업이 아닌 현대 등 특정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부분적으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이 본질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사업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개발 목표의 압축 및 구체화

정부의 개성공단 개발계획이 현대의 개발총계획과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개발목표가 개발총계획의 목표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개성 일대의 전면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현대의 개발목표와 통일정책 및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 사업의 목표는 그 범위, 방향 등에서 일치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모든 남북경협이 사실상 공적인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입주시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공단개발과 상업 및 주거시설, 관광시설의 개발의 공적 성격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경협 사업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공단 개발 사업이 여타의 남북경협 사업과 구별되는 공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단개발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개발된 산업단지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분양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여타 남북경협 사업과 구분되는 것은 그것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혹은 중소기업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1단계만 해도 100만평의 공단을 개발하여 수 백개의 기업을 입주시키는 사업이며, 2단계 역시 공단 개발이 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단순히 남북경협 차원에서만 추진될 수는 없는 것이며, 경제정책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공단개발 사업은 또한 남북경협의 측면에서도 여타의 남북경협 사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1단계만 해도 7~10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며,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북한 노동자의 고용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이는 어떠한 남북경협 사업도 해 낼 수 없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추동해 낼 것이다. 또한 공단의 개발은 북한 지역인 개성지역에 시장경제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공단의 성공적 개발은 북한 여타지역에서의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성지역 개발목표는 공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공단개발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남북한의 생산요소 결합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의 개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생산요소 결합 방식은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을 북한의 단순 노동력 및 토지와 결합하는 단순한 형태이지만 개성공단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생산요소 결합방식은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앞선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내부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거나 이들에게 최종 조립공정을 맡길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북한지역을 대륙을 위한 물류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1단계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단지로서의 개성공단은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입지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공기지로 육성해 나가며, 이를 기반으로 개성공단을 섬유·의복, 전기·전자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전진기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단의 안정적 정착, 대내외적 여건의 호전 등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며 노동집약적 업종과 함께 기술집약적 업종도 육성해 나감으로써 개성공단을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입지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외국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인 목표와 함께 남북한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접촉의 장으로서의 개성공단의 특성을 활용하여 남북경협을 위한 각종 전시장, 거래상당 창구, 노동자 교육 및 시장경제 교육, 기술교류의 장 등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경협 및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물류기지로써 개성지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개성 관광사업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개발목표를 '남북한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의 개발'로 설정하면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은 남북한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단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여타의 개발사업은 이러한 목표에 기여하거나 적어도 충돌하지 않은 선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3. 현실적 개발 규모 및 범위의 설정

개발목표를 '남북한의 생산요소 결합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의 개발'로 설정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개발 규모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개발의 주안점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두며,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의 개발 부분은 산업단지로서의 개성공단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이 부분은 '공단지구 내의 편의시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측이 제공할 수 있는 생산요소인 토지와 노동력 활용의 측면에 주안점을 둔다면, 개성공단의 개발규모는 현대의 계획에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시설 부분은 공단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한정하며, 물류기지 부분이나 관광사업 부분은 사업의 전개와 함께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발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설정은 필요하겠지만 이 개발규모가 특정의 개발 시기나 개발단계로 직접 연결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질적 발전을 수반하면서 개발지역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 단계에서 이러한 질적 발전의 시기나 속도에 대하여 미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 개발규모가 언제 완료될 것인지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 4. 단계별 개발 전략의 재검토

1단계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시점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단계적 개발론은 산업단지로서의 개성공단의 질적 변화 혹은 공단에 실제 입주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론은 개발규모 혹은 개발기간이라는 양적 범주에 초점을 둔 것으로 양적 단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의 개발은 양적 확장과 질적 발전이 병행이 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매우 큰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공단의 질적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양적 단계론으로부터 질적 단계론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적 단계론은 개성공단 사업의 단계는 개발규모나 개발 시기를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공단 개발의 질적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때 단계설정의 기준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생산요소 결합의 방식과 공단의 사업환경 등의 질적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계를 구분할 때에만 1단계에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발하며, 2단계에는 여기에 기술집약적인 업종을 추가로 배치하고, 3단계에는 대기업형 업종도 입주시킨다는 개성공단의 업종구성 고도화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개성공단의 기본개념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이라는 생산요소 결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북한이 아닌 남한과 세계시장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제공할 수 있는 생산요소는 토지와 비숙련 노동자이며, 시장은 남한시장과 일부 해외시장이다. 미국시장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으며, 여타 시장도 결코 여건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의하여 개성지역으로 반출될 수 있는 설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최저임금 57달러의 노동력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즉,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쟁우위 조건이 생산비인 단순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개성공단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들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만 마련된다면 일정한 규모까지는 노동집약적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 문제 역시 남한 내수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 구성을 다양화하고 적절한 규모를 유지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시장상황에 대한 민감한 대응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일정한 지원을 전제로 할 때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공단의 업종 구성이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업종이나 대기업형 업종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인 노동력 부문에서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술집약적 업종이 수익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력의 가격이 낮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 양질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이나 노동력의 공급 등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업의 노동자 고용 및 사용에서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노동자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시키고, 생산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원치 않는 노동자는 해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습득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노무관리에 있어서 기업의 완전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술집약형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반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반출설비에 제한이 있어서는 이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 문제 역시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기술집약형 업종은 특정 시장에 대하여 접근성이 제한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시장접근의 제한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기술집약형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대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안정성 역시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집약적 업종에 비해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따라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자산 보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안전한 회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행,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태도의 신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핵 실험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개성공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핵 문제 해결의 일정한 진전이 개성공단 사업의 진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위협요소가 현저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서도 질적 진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1단계 사업에서 정부는 공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기업들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많은 직·간접적 지원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단계 사업에 정부가 기반시설의 건설 등을 지원해야 하겠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지원은 삼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2단계는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성에 대한 평가 결과 공단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의하여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면, 2단계 개발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산업단지로서의 개성공단이 입주 업종 및 기업의 고도화를 수반하면서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요소의 결합 방식의 질적 개선과 개성공단 사업 여건의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계론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1단계 사업에 머무를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의 단순한 확장으로서의 2단계 사업의 추진이라는 전략은 현재의 개성공단 사업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양적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다만 1단계에 건설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단규모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자는 관점은 사업의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1단계의 확장 규모는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북한 노동력의 공급문제, 남한 기업의 입주수요 및 구조조정과의 관계, 시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단계에서의 사업 환경으로서의 북한 및 남북관계의 변화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변화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질적 변화로서의 3단계는 북한 경제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 단계에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남한 및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능해지면, 개성공단은 북한의 여타 지역과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는 크게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3단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에 개성공단의 개발규모, 개발방향 등은 개성공단 자체만이 아니라 북한의 여타 지역과의 관계 하에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남북한 산업협력의 틀 속에서 개성공단은 접근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3단계의 개발전략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기반시설이 건설되고 입주 업체가 선정되며 관련 제도가 구축됨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입주한 수 백개의 기업들이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 정책차원에서 시작했던 개성공단 사업을 이제 산업정책, 혹은 기업정책 차원에서 한층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인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되는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공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2단계 이후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때 철저하게 경제적 계산에 근거하여 개발 방향, 사업규모, 시기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이야말로 남북경협을 확대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이는 통일정책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경제자료

### 자금세척방지법, 상업은행법, 중앙은행법 전문

최근 북한이 자금세척방지법, 상업은행법, 중앙은행법 등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금융체제를 정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본 경제자료에서는 최근 입수된 자금세척방지법, 상업은행법, 중앙은행법의 전문을 소개한다.

지난 2006년 10월 25일 채택된 자금세척방지법은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세척의 정의, 적용대상, 자금세척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재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금·재산의 동결과 몰수, 업무중지, 행정적·형사적 책임 등 벌칙규정까지 자세히 포함하고 있다.

상업은행법은 2006년 1월 25일 채택되었으며 모두 6장 57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에서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라고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상업은행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밝히면서 상업은행법이 대내외적으로 투명하고 신뢰있는 금융체제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은 상업은행의 설립과 업무, 회계, 통합 및 해산,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법은 2004년 9월 29일 채택되었으며 모두 5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국가의 화폐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여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명기하여 법 제정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은 중앙은행의 기구, 중앙은행권, 화폐유통조직,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본 자료게재를 허락해주신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

주체 95(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9호로 채택

### 제1조 (자금세척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은 금융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비법적인 자금, 재산의 조성과 유통을 막고 금융체계의 안정보장에 이바지한다.

### 제2조 (자금세척의 정의)

자금세척은 비법적으로 얻은 자금,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한것처럼 하는 행위이다.

자금세척에는 비법적으로 마련한 자금, 재산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그것을 알면서 도와준것 같은 행위가 속한다.

### 제3조 (자금세척의 방지원칙)

자금세척을 방지하는 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자금세척방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자금세척행위를 엄격히 단속통제하도록 한다.

### 제4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의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자금세척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맺은 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조 (자금세척에 리용될수 있는 자금, 재산)

자금세척에 리용될 수 있는 자금,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나 증권, 그 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2. 마약, 무기의 밀수, 밀매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3. 비법적인 화폐, 상품매매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4. 비법적인 부동산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5. 추가적소득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부, 투자같은 신용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6. 국가납부금과 세금을 바치지 않은 것으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7.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 얻은 자금이나 재산

- 8. 비법적인 귀금속, 유색금속의 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 9. 매음, 도박, 퇴물, 헐잡, 횡령, 강도 같은 행위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제6조 (돈자리개설의 신청)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돈자리개설신청서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돈자리개설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신분, 주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7조 (돈자리개설의 승인과 부결)

금융기관은 돈자리개설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돈자리개설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인의 돈자리신청)

금융기관은 대리인을 통한 돈자리개설신청이 제기될 경우 그의 신분과 위임장 같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명 또는 암호로 돈자리개설을 할수 없다.

제9조 (돈자리를 개설하지 않은 자의 신분확인)

금융기관은 돈자리를 개설하지 않은 자와 자금거래를 하려 할 경우 그의 신분, 주소, 련권, 영업허가증 같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려 할 경우에는 자금의 용도와 상대방의 신분, 주소 같은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제10조 (현금의 지불신청)

현금의 지불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현금지불신청서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현금지불신청서에는 금액, 용도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현금의 지불)

금융기관은 현금지불신청서를 검토하고 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불할수 없다.

제12조 (거래자의 자금, 재산거래의 확인)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경영규모와 업무내용, 직업 같은것에 맞지 않는 큰 규모 또는 일정한 규모로 반복되는 자금과 재산거래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금세척의 보고)

자금세척행위를 발견한 금융기관은 즉시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세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정재산의 장악과 보고)

금융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하려 하거나 새로 생긴 고정재산을 금융기관과 재산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통계자료의 제출과 분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류통 통계자료를 제때에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금융기관은 화폐류통 통계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제16조 (거래내용의 기록)

금융기관은 거래내용을 장부, 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같은것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행명칭, 거래시간, 돈자리, 자금의 원천과 목적지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거래문건의 보관기관)

금융기관은 거래문건을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국내거래문건은 5년 또는 10년, 대외거래문건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서의 작성시달)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척방지를 위한 지도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지도서에는 자금세척방지를 위한 업무의 조직, 방법 같은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상태자료의 보고)

금융기관은 업무상태자료를 분기 1차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제출된 업무상태자료를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업무내용의 검열기관)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금세척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과 거래자의 업무내용을 7일간 검열할 수 있다.

검열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다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자금세척방지자료의 보장)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금세척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검증과 통보)

회계기관은 정기적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검증을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자금세척으로 의심되는 자료는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3조 (자금세척자료의 처리)

금융감독기관은 발견한 자금세척자료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에는 세척하였거나 세척하고 있는 자금, 재산의 금액, 수량, 원천, 소유자, 책임관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자료의 비밀보장)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금세척방지사업과정에 알게 된 거래자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비밀 또는 조사중에 있는 자료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자료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거나 승인없이 보여줄수 없다.

제25조 (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협조)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다른 나라의 제기에 따라 자금세척방지사업을 협조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에 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협조는 자료조사, 정보교환, 자금이나 재산의 동결 또는 압수, 몰수, 범인인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26조 (자금세척방지협조의 거절조건)

다른 나라에서 제기한 자금세척방지협조를 거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화국의 주권과 사회경제적안정, 발전을 파괴하려는 정치적이도가 있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에 저촉될 경우
3. 피고의 권리를 충분히 담보할수 없을 경우
4. 인도주의적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공화국에서 내린 최종판결이 기본 요인으로 될 경우
6. 외교적경로밖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경우

제27조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금융감독기관이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자금세척방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 (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현대화, 정보화)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은 자금세척방지사업을 현대화, 정보화하며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간이 한다.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금세척방지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30조 (자금, 재산의 동결과 몰수)

자금세척행위와 관련있는 자금이나 재산은 동결 또는 몰수한다.

제31조 (업무중지)

돈자리개설절차를 어겼거나 의심스러운 자금세척자료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중지시킬수 있다.

제3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자금세척방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주체95(2006)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호로 채택

###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 제1조 (상업은행법의 사명)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의 설립과 업무, 회계, 통합 및 해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업은행의 역할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상업은행의 설립원칙)

상업은행의 설립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 요구이다.

국가는 상업은행의 설립에서 공정성, 객관성과 실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제3조 (상업은행의 업무원칙)

상업은행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상업은행업무에서 신용을 지키며 그것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 제4조 (상업은행의 운영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 제5조 (상업은행일군의 양성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상업은행의 일군은 해당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 제6조 (상업은행사업의 지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상업은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국가는 상업은행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설립운영하는 상업은행에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상업은행의 설립운영과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8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업은행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제9조 (상업은행의 설립승인)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은 중앙은행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할수 없으며 <은행>이라는 글자를 기관명칭에 리용할수 없다.

제10조 (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의 제출)

상업은행을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신청문건에는 은행명칭, 밑자금, 거래대상, 업무범위, 소재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의 심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된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상업은행의 운영준비)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기간에 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준비를 끝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운영준비기간을 밑자금규모와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정해주어야 한다.

제13조 (상업은행의 설립등록, 영업허가증발급)

운영준비를 끝낸 상업은행은 30일안으로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등록된 상업은행에 10일안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조 (상업은행의 기구)

상업은행은 관리부서, 업무부서, 정보처리부서, 양성부서, 내부경리부서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 (지점, 대표부의 설치)

상업은행은 국내와 국외의 여러 지역에 지점, 대표부 같은 기구를 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6조 (상업은행의 변경등록)

상업은행은 은행명칭, 밑자금, 거래대상, 업무범위, 소재지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변경등록신청문건을 30일안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업은행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 제17조 (영업허가증의 재교부)

상업은행은 영업허가증을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 제18조 (상업은행업무종류)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금업무
2. 대부업무
3. 돈자리의 개설과 관리업무
4. 국내결제업무
5. 대외결제, 수형과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업무
6. 외화교환업무
7. 거래자에 대한 신용확인 및 보증업무
8. 금융채권발행 및 팔고사기업무
9. 귀금속거래업무

- 10. 고정재산등록업무
- 11. 화폐의 팔고사기업무
- 12. 이밖에 승인받은 업무

제19조 (예금)

상업은행은 유휴화폐자금을 적극 동원하기 위하여 거래자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은행은 예금을 늘이기 위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벌려야 한다.

제20조 (예금의 지불과 비밀보장)

상업은행은 거래자가 예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경우 원금과 리자를 제때에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예금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불준비금의 보유)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상업은행은 정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불준비금은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22조 (준비예금)

상업은행은 정한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상업은행이 통합 및 해산되는 경우에 찾아쓸수 있다.

제23조 (대부조건)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상업은행은 대부금을 계약내용에 맞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대부의 원천)

대부원천은 거래자로부터 받아들인 예금과 자체자금, 중앙은행에서 받은 대부금 같은 것으로 한다.

상업은행은 대부원천을 초과하여 대부를 줄수 없다.

제25조 (대부계약)

상업은행은 상환능력이 있는 거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를 주어야 한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대부용도, 담보, 상환기간과 방식, 리자를 같은것을 밝

하여야 한다.

제26조 (대부금의 담보, 보증)

상업은행은 대부를 주기 전에 차입자로부터 대부금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을 세워야 한다.

담보는 차입자의 자금으로 마련한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보증은 해당 상급기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 제3자가 서면으로 한다.

제27조 (대부의 상환)

상업은행은 계약에 따라 대부원금과 리자를 정한 기간에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원금과 리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하려는 경우 해당 상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예금 및 대부리자률)

상업은행은 정한 기준리자률과 변동폭범위에서 예금리자률과 대부리자률을 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결제의 조직)

상업은행은 거래자가 돈자리를 통하여 화폐거래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결제조직을 짜고들여야 한다.

결제는 돈자리에 화폐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0조 (돈자리의 개설)

상업은행은 거래자에게 현금 및 환치거래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여줄수 있다.

거래자는 한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들수 있다.

개인의 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예금할수 없다.

제31조 (대금의 결제)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지불지시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대금결제는 환치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2조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 따르는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

은 승인받은 해당 상업은행이 진행한다.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 제33조 (외화의 교환)

해당 상업은행은 외화교환업무를 할수 있다.

외화교환업무는 기준환자시세와 변동폭범위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제34조 (거래자의 신용확인 및 보증)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거래자의 경영상태와 신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거나 보증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거래자는 경영상태자료를 상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확인, 보증은 신용장 또는 보증장 같은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5조 (금융채권의 발행 및 팔고사기)

상업은행은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할수 있으며 류통중의 각종 채권을 팔거나 살수 있다.

금융채권의 발행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귀금속의 거래)

귀금속의 거래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귀금속의 수매와 보관, 판매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37조 (고정재산의 등록)

해당 상업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등록은 부문별, 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 제38조 (화폐의 팔고사기)

상업은행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화폐의 팔고사기는 환자시세에 따라 조선원과 외화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9조 (봉사료금)

상업은행은 거래자로부터 업무에 따르는 봉사료금을 받을수 있다.

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제40조 (국고업무의 대리)

국고업무대리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국가예산자금지출문건에 따라 자금을 신속히 지출하며 거래자가 바치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중앙은행에 제때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1조 (통계자료의 제출)

상업은행은 화폐류통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정한 기간에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에는 화폐류통정형과 예금, 대부관계 같은 거래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제42조 (회계제도의 수립)

상업은행은 모든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계산, 분석하고 결산하는 회계제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회계는 시초서류 또는 아래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제43조 (회계결산의 주기)

상업은행은 주기에 따라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제44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상업은행은 회계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과 지출, 리익금 및 손실금과 그 처리정형, 채권 채무관계 같은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5조 (회계결산서의 검증, 제출)

상업은행의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은 회계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회계문건의 보관, 취급)

상업은행은 회계문건을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보여줄수 없다.

제47조 (회계년도, 기준회폐)

상업은행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제48조 (통합 및 해산사유)

상업은행은 경영과정에 거래자의 이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 다른 상업은행에 통합하거나 해산할수 있다.

제49조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제출)

다른 상업은행에 통합하거나 해산하려는 상업은행은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작성은 정한 양식에 따른다.

제50조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심의)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을 받은 중앙은행은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통합 및 해산이 승인된 상업은행의 영업허가증은 즉시 회수한다.

제51조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업무청산)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은 정한 절차에 따라 은행업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의 업무청산을 바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

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관계는 통합하는 상업은행에 그대로 넘어간다.

통합한 상업은행은 넘겨받은 채권채무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53조 (벌금)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당하게 예금을 받아들였거나 대부를 주었을 경우
2. 정한 기준리자률과 변동폭범위를 초과하여 예금 또는 대부리자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한 리류없이 결제문건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4. 외화교환을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정한 봉사료금을 적게 또는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
6.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중지하였거나 업무시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제54조 (업무중지)

업무를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하였을 경우
2. 거래자의 요구대로 예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3.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금하지 않았을 경우
4. 업무검열을 방해하였을 경우

제55조 (상업은행설립승인의 취소)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을 취소한다.

제5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상업은행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7조 (분쟁해결)

상업은행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주체93(2004)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6호로 채택

###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 제1조 (중앙은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화폐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발권은행)

중앙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권은행이다.

국가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금융사업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3조 (중앙은행권과 화폐유통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는 중앙은행권이다.

국가는 통화조절과 화폐유통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폐의 가치와 환률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 제4조 (금융사업의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금융사업은 중앙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 제5조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금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 제7조 (금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 (특수경제지대에서 금융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금융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 제9조 (중앙은행의 구성)

중앙은행은 총재와 약간명의 부총재들로 구성한다.

총재는 중앙은행을 대표하며 중앙은행전반사업을 지도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사업을 도우며 총재가 없을 경우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중앙은행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 제10조 (중앙은행리사회)

중앙은행은 금융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리사회를 둔다.

중앙은행리사회는 리사장, 리사들로 구성한다.

### 제11조 (중앙은행리사회 리사장)

중앙은행리사회의 리사장은 중앙은행총재가 한다.

리사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내각앞에 책임진다.

### 제12조 (중앙은행의 소재지)

중앙은행의 소재지는 평양시이다.

### 제13조 (중앙은행지점, 임무, 권한)

중앙은행은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조직한다.

지점은 해당 지역의 통화조절과 화폐유통을 조직하고 금융사업을 감독한다.

지점은 사업정형을 정기적으로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은행일군의 양성)

중앙은행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일군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 제3장 중앙은행권

### 제15조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다.

중앙은행권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6조 (중앙은행권의 제조)

중앙은행권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정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규모안에서 중앙은행권의 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념주화의 발행)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기념주화를 발행할수 있다.

기념주화의 형식과 종류는 내각이 정한다.

제18조 (중앙은행권의 교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은행권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유통시킬수 없게 된 중앙은행권을 제때에 회수하여 새 중앙은행권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 방법)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0조 (중앙은행권의 소각)

중앙은행권의 소각은 화폐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중앙은행권의 보관)

중앙은행권의 보관은 안전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수 있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22조 (중앙은행권의 위조, 변조금지)

중앙은행권은 위조하거나 변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조, 변조된 중앙은행권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제때에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제23조 (중앙은행권의 대외반출금지)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권의 견본, 유통이 정지

된 중앙은행권 같은것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 제4장 화폐류통조직

##### 제24조 (화폐류통계획의 작성)

중앙은행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폐류통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화폐류통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 (화폐의 발행)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된 화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외화, 귀금속, 증권외의 팔고사기 같은 방법으로 류통에 내보내거나 류통과정에서 회수한다.

##### 제26조 (통화조절)

통화조절은 화폐류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류통화폐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조절사업을 시기별,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 제27조 (결제조직)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을 촉진하기 위한 결제를 신속정확히 조직하여야 한다.

결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 제28조 (금융기관의 대부)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이 부족되는 금융기관에 대부를 준다.

대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대부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 제29조 (화폐의 팔고사기)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금융기관도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 제30조 (기준리자률의 제정)

기준리자률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리자률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대부리자률과 예금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귀금속의 관리)

귀금속의 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 은 같은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 판매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대외판매는 중앙은행이 위임한 금융기관도 할수 있다.

제32조 (예금돈자리의 개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채권발행의 등록관리)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채권의 발행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채권발행을 승인받은 기관은 채권발행등록보고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발행된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할수 있다.

제34조 (고정재산의 장악)

중앙은행은 국가의 고정재산을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장악은 부문별, 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융정보의 교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금융과 관련한 정보교환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금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며 제때에 중앙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합된 회계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화폐류통자료의 종합)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실태에 대한 통계종합, 조사, 분석, 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종합된 자료는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고대리)

중앙은행은 국고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의 연계밑에 국가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지출은 수입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39조 (기타 금융사업)

중앙은행은 내각이 승인한 범위의 금융사업을 할수 있다.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업무활동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금융기관의 설립승인)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기관은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설립이 승인된 금융기관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 (금융기관의 해산, 통합)

해산하거나 통합하려는 금융기관은 해산 또는 통합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하며 청산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융기관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보상)

금융사업을 무질서하게 조직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5조 (벌금)

승인없이 금융사업을 진행하여 국가의 화폐유통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6조 (자격급수의 박탈)

중앙은행에 해당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금융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경제자료

### 국제기구의 대북구호활동 및 북한의 식량전망

본 자료는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기아위험지역'(Hunger's global hotspots)이라는 제목의 WFP 활동보고서와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역시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확전망과 식량상황'(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에서 북한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한 것이다 (2007.1~2007.5).

2006년까지 'WFP 긴급구호보고서'로 발표되었던 '기아위험지역'에서는 주로 WFP의 구호활동과 관련 정보에, FAO의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그리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의 식량전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과 관련해 두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WFP>

- 북한 전 지역에 매일 평균 500g의 식량을 제공한다는 국가배급체계(PDS) 능력에 의문이 제기됨. 기껏해야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부분적인 배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WFP는 현재 29개 군에서만 활동함으로써 총 수혜자 수는 724,149명(총 목표 수혜자 수의 39%).
- 현재와 같은 식량수입과 식량지원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7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해 식량이 불안정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영양실조율이 크게 증가될 수 있음.

#### <FAO>

- 2006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공식적으로 4.07백만톤으로 추정(쌀 164만톤, 옥수수 196만톤). 따라서 2006/2007년 곡물수입 필요량(주로 식량지원)은 96만톤으로 예측됨.
- 수확 때까지 기후가 온화하다고 가정한다면 현 단계에서 볼 때 겨울/봄 이모작 수확량(밀과 보리)은 작년 수준인 22만톤, 감자생산은 23만톤으로 예상.

자료원: <http://www.reliefweb.int/>

## 1. 세계식량계획(WFP)

### <기아위험지역: 북한(2007. 2. 14)>

- 현재의 제한된 자금조달로 WFP는 29개 군, 약 74만명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자금제약으로 가장 식량이 취약한 50개 군, 총 190만명에게 식량을 확대 공급하려는 노력에 지장을 받고 있다.
- 북한 전 지역에 매일 평균 500g의 식량을 제공한다는 국가배급체계(PDS)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껏해야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부분적인 배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엄격한 접근제한과 여행조건이 WFP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예로 여행계획은 2주전에 제출해야 한다).
- 군 소재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대한 방문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WFP의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식량지원은 없다'(no access, no food)는 정책은 계속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필요성이 평가될 수 있고 배급이 모니터되는 지역에만 식량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최근 UNDP 집행이사회 연례회의에서 북한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에 따라 북한에 있는 유엔사무소들은 새로운 주목대상이 되었다. 일부 요원들은 UN 기구들의 경화사용과 근무관행에 우려하고 있다. 모든 UN 기구들의 서약에 따라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자금과 프로그램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을 것이다. WFP는 2005년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 <기아위험지역: 북한(2007. 2. 22)>

- 보건성은 2월 16일 10개의 모든 도의 30개 군에서 약 3,000건의 홍역 발생이 보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대부분의 발병은 10세에서 40세 사이).
- 보건성은 WHO와 UNICEF에 지원을 요청했고 7~45세에 사이에 있는 사람들(총 5백만명 이상)에게 홍역면역접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황사 때문에 3백만달러가 넘는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을 UNICEF와 WHO에 지원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 기상전문가들은 금년 봄 한반도에는 심각한 황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한 달 빠른 2월 13일에 황사가 처음 나타났다.
- 먼지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보건문제와 농산물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울겨울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봄과 여름 수확물에 해충의 발생이 예상된다.

### <기아위험지역: 북한(2007. 3. 9)>

-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회담이 3월 2일 평양에서 종료되어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화상회의가 이 달에 있고 5월에 직접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다.
- 그러나 북한에게 절박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즉각적으로 재개하지는 않았다. 남한은 북한이 7월 미사일을 발사한 후 연례적인 식량지원을 중단하였다.
- 지난 달 6자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5개의 실무그룹 중 일부가 다음 주 시작될 것이다. 월요일 북미실무그룹이 뉴욕에서, 북일실무그룹이 하노이에서 개최될 것이다. 6자회담은 3월 19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고위급 유럽연합 트로이카 대표단이 3월 6일에서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또한 고위급 호주대표단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 UN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3월 13일에서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의 방문이후 약 15명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 밀, 콩, 탈지분유(DSM)가 심각하게 부족해 일부 영양보강식품에서 일시적으로 탈지분유를 빼는 등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 <기아위험지역: 북한(2007. 3. 16)>

- WFP는 북한의 관련부처와 2분기 회의를 개최해 지난 분기와 다음 3개월 동안의 장기구조조정프로그램(PRRO) 이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한 모든 부처가 WFP와 긴밀히 협조하려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회의는 성공적인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 활동을 중단한 UNDP가 평양사무소를 언제 폐쇄할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WFP는 필요하다면 UNDP가 없는 동안 이를 대신해 설비, 문서, 자산의 보관 등 일부 관리자 기능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남북합의에 따라 북한은 27만 2천톤의 비료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한 적십자에게 전달하였다. 3월말이나 4월초에 선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남한에서는 선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북한정부가 요구한 전량을 지원할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 지난 달 6자회담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5개의 실무그룹 가운데 2개의 실무그룹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실무그룹 회담은 금융거래 분야에서 특히 진전을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일 실무그룹은 전쟁배상과 납치자문제로 인해 결렬되었다. 6자회담은 3월 19일 재개될 예정이다.

- 고위급 유럽연합 트로이카 대표단이 3월 6일에서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다. 회담에서는 비핵화, 경제개발, 인권문제 등을 솔직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구제역이 평양 외곽의 농장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AO는 이 지역이 봉쇄되었고 전염된 가축은 추가전염을 막기 위해 도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 농업성은 반경 60km 내에 있는 44,000마리의 동물들에게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위급 호주대표단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WFP는 하루 동안의 현장방문에 동참할 것이다.
- UN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3월 13일에서 14일까지 북한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사무총장의 방문이후 약 15명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 밀, 콩, 탈지분유(DSM)가 심각하게 부족해 고아원과 탁아소의 어린이에게 영양물로 제공하는 일부 영양보강식품에서 일시적으로 탈지분유를 빼는 등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 <기아위험지역: 북한(2007. 4. 20)>

- 현재 WFP는 제한된 자금 때문에 주민의 약 3%(70만명의 수혜자)에만 지원되고 있다.
- 북한정부는 WFP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190만명의 수혜자에게 연간 75,000톤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기부가 없으면 WFP의 식량공급은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점차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특히 어렵고 힘든 '춘궁기'가 될 것이다.

#### <기아위험지역: 북한(2007. 5. 18)>

- 지난 5월 17일 5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간에 기차가 운행되었다. 이것은 남북간 화해협력의 결정적 단계라고 남북은 환영하였다.
- 남북간의 기차운행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40만톤의 쌀 지원을 앞당기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 캐나다 곡물은행(CSGB) 대표단이 구호활동 재개와 WFP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캐나다 곡물은행은 WFP가 주관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관 컨소시엄인 FALU(Food Security Liaison Unit)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자금을 지원하였다.
- 북한이 춘궁기에 들어섰지만 WFP는 계획된 수혜대상자의 2/3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량 부족이 이미 5월에 닥쳐와 배급이 지연되고 있고 수혜자들에게 식량지원이

- 중단되고 있다.
- WFP는 6월에 곡물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달에 식량지원은 700,000명 가운데 400,000명에게 중단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6개의 식품공장(취약계층을 위한 영양보강식품 생산)중 2개 공장이 가동을 중지할 것이다.
  - 곡물도착은 7월에 다시 시작되어 WFP는 700,000명의 수혜자들에게 배급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지원곡물과 자금기반이 아주 불안정해 특히 향후에 학교급식에 대한 중단이 9월말까지 재고될지도 모른다.

### <사업의 우선순위: 북한(2007. 4. 23)>

#### PRRO 10488.0 -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회복지원(2006. 6~2008.3)

<표 1> 향후 6개월간의 부족량

곡물	콩	혼합식품	기름	기타
14,597톤	3,253톤	0	275톤	644톤
2007.7	2007.7	n/a	2007.7	2007.7

<표 2> 자금조달

(단위: 미 달러)

	요구액	실제조달액	부족액	부족율(%)
총 규모	102,234,076	21,426,726	80,807,350	79
2007	45,921,308	4,403,048	41,518,260	90

자연재해와 경제난으로 야기된 식량부족이 겹쳐 WFP는 현재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 구호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WFP는 현재 29개 군에서만 활동함으로써 총 수혜자 수는 724,149명이다(총 목표 수혜자 수의 39%).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군 선택을 북한정부와 합의할 수 있다면 PRRO는 50개 군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엄격한 접근 제한과 여행조건이 WFP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계획은 2주전에 제출해야 한다. 군 소재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대한 방문이 허가되지

- 않고 있다.
- 주요 지원망의 중단으로 6월 활동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 임산부 등 WFP의 가장 취약한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 밀, 콩, 탈지분유(DSM)가 심각하게 부족해 고아원과 탁아소의 어린이에게 영양물로 제공하는 일부 영양보강식품에서 일시적으로 탈지분유를 빼는 등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식량수입과 식량지원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7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해 식량이 불안정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영양실조율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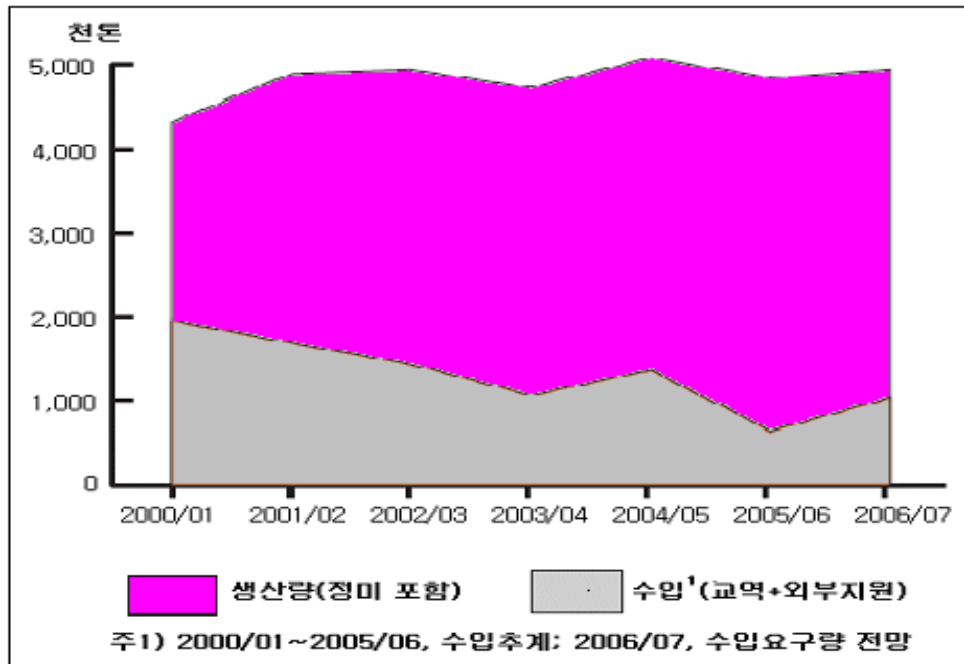
## 2. 식량농업기구(FAO)

FAO는 외부지원이 필요한 위기국가(총 33개국이 포함)의 하나인 북한을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속한 국가는 아주 낮은 소득, 예외적으로 높은 식품가격, 혹은 국내에서의 유통능력의 결여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역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FAO는 북한이 이러한 그룹에 속한 주 원인으로 경제난과 홍수를 열거하고 있다.

### <수확전망과 식량상황: 북한(No. 1, 2007. 2)>

2006년 북한의 곡물수확은 약 3.8백만톤(정곡기준)으로 잠정 추정되며 이 규모는 전년 생산량보다 약 30만톤이 감소된 규모이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이상의 좋은 수확이다. 지난 몇 년간 곡물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 곡물수입(주로 식량지원과 일부 상업적 수입)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국내생산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북한은 최소 필요량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6/2007년 곡물수입 필요량은 약 1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지난 여름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수입 필요량을 얼마나 충족시킬지에 대해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지난 11월 양곡연도의 시작 이후 단지 8천톤 정도의 곡물만이 수입되었다(식량지원 포함).

[그림 1] 북한의 곡물생산과 수입량



<수확전망과 식량상황: 북한(No. 2, 2007. 4)>

2006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공식적으로 4.07백만톤으로 추정된다(쌀 164만톤, 옥수수 196만톤). 이 규모는 초기 예상보다 다소 나아졌고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그러나 전년도 보다 10만톤이 감소한 실적이다. 이러한 수정된 생산규모에 따라 2006/2007년 곡물수입 필요량(주로 식량지원)은 현재 96만톤으로 예측된다. 식량지원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식량확보가 여전히 주요 관심사항이다.

<수확전망과 식량상황: 북한(No. 4, 2007. 5)>

2006년 평균 이상의 주요 곡물생산과 현재 겨울/봄 이모작 수확에 대한 양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2007년 양곡연도(11월/10월)에 심각한 곡물부족이 예상된다. 남한이 최근 4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2006/2007년 부족량이 51만톤에 달하고 있어 추가적인 식량지원과 상업적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 북한의 식량수급

식량수급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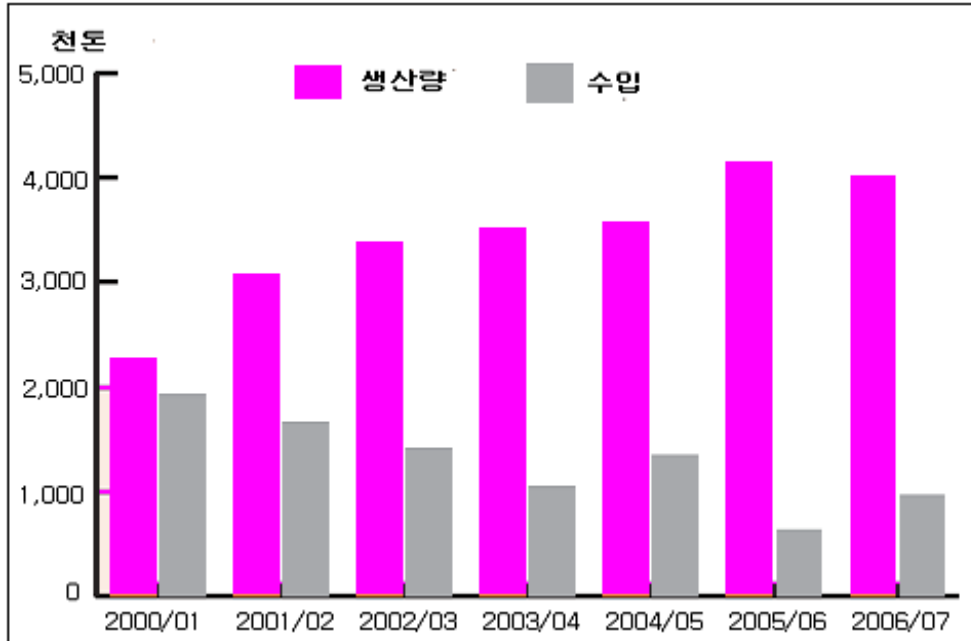
2006년 북한의 총 곡물생산은 약 4백만톤(정곡기준)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수확이 좋았던 2005년보다 약 2.6%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5년간의 평균보다는 14%가 증가한 것이다(아래 [그림 2] 참조). 지난 몇 년간 농업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곡물수입 필요량도 2000년 이후 거의 절반 수준이 되었다. 2006년에 생산량이 다시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2006/2007년 양곡연도(11월/10월)의 곡물부족량은 1백만톤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규모는 지난 7년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추정된 수입규모가 도입될 수 있다면 북한의 1인당 곡물소비는 약 160kg으로 현상유지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중앙정부는 4만톤의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하였고 9백톤의 식량을 지원받았다. 또한 남한은 4월 18~22일에 개최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40만톤의 쌀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행된다 해도 올 양곡연도 부족분은 51만톤으로 이것은 추가적인 상업적 수입과(또는) 식량지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 2006/2007년 겨울/봄 이모작 수확전망 밝음

2006/2007년 이모작(겨울/봄) 곡물수확 전망은 양호하다. 이 작물은 주로 밀과 보리로 6월부터 수확한다. 이 수확물은 연간 곡물생산의 5%에 달하고 있다. 한편 감자도 이 기간에 재배되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문제로 몇 년전부터 식량으로서 감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작물들의 총 재배면적은 작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후도 적절하게 내린 비와 정상적인 온도를 보여 양호하였다. 수확 때까지 기후가 온화하다고 가정한다면 현 단계에서 볼 때 겨울/봄 이모작 수확량은 작년 수준인 22만톤, 감자생산은 23만톤으로 예상된다.

2007년 주곡인 쌀과 옥수수외 파종은 겨울/봄 작물이 수확되는 시점인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시작될 것이다. 여느 때처럼 생산량은 우기동안의 기후조건, 비료 및 기타 기본적인 농업투입물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비료 및 가타 투입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급부족 상태에 있다. 남한은 지난 몇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30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그림 2] 북한의 곡물생산량 및 수입량(양곡연도 11월/10월)



## 경제자료

### 미국의 국익, 전략, 정책

Dick K. Nanto, Emma Chanlett-Avery

본 자료는 2007년 4월, "The North Korean Economy: Overview and Policy Analysis" 제하의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를 일부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를 개관하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자유무역지대를 소개하며, 국제무역과 외환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국익, 전략, 정책을 분석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미국의 국익, 전략, 정책 부분을 소개하였다.

보고서는 △ 서론, △ 북한경제 개요, △ 경제철학, △ 산업별 개요, △ 경제개혁 및 자유무역지대, △ 국제무역, △ 외환 취득 출처, △ 북미 무역 관계, △ 남북 경제 관계, △ 북중 경제 관계, △ 북일 경제 관계, △ 북러 경제 관계, △ 미국의 국익, 전략, 정책, △ 법안, △ 연대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미국의 국익, 전략, 정책은 △ 미국의 이익, 목표, 전략, △ 현행 미국의 정책, △ 6자회담, △ 가능한 경제 인센티브 △ 에너지와 식량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인 Dick K. Nanto는 미 의회조사국 대외관계, 국방, 무역부문의 산업무역 전문가(Specialist in Industry and Trade 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 Division)이고, Emma Chanlett-Avery는 미 의회조사국 대외관계, 국방, 무역부문의 아시아문제 분석가(Analyst in Asian Affairs 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 Division)이다.

원문은 <http://www.fas.org/sgp/crs/row/RL32493.pdf> 에서 볼 수 있다.

## 미국의 국익, 전략, 정책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대북전략의 세가지 축으로는 경제, 외교, 군사적 수단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이 세 분야의 전략적 정책수단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고, 정책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 정책의 외교적, 군사적 측면을 검토한다.

### 1. 미국의 국익, 목표, 전략

북한은 미국 국익의 일부를 위협한다.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의 개발 및 잠재적인 확산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북한의 미사일 운반시스템은 현재 남한 및 일본에 도달할 수 있고,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대포동2호)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 군대는 남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과 미군부대와 가까이 있는 비무장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김정일이 이끄는 독재, 공산주의, 억압적인 북한 정권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경제적 선택이라는 미국 가치에 반해 통치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명시된 목표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하고 있다. (1)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을 보호한다. (2) 전 세계적인 테러를 퇴치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미국의 우방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3) 지역간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한다. (4) 자유 시장과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5)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널리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북한에 적용해 보면, 미국의 당면 목표는 (1)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중지하거나 제거 (2) 미사일의 불법 거래, 마약거래, 화폐 위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불법이거나 의심스러운 북한의 활동을 축소 (3)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4) 북한이 국제적인 테러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보장 (5)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 주민 생활 수준, 통치, 김정일 정권 등 각 분야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유도 (6) 북한에 대한 남한과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반 통념은 다음의 가정에 근거한다. (1) 엄격한 모니터링 장치가 없다면 평양은 어떤 협정이든지 눈속임 할 것이다 (2)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화폐 위조, 마약 거래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을 항상 위반한다. (3)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주로 평양 밖의 주민에 해당되며, 군 및 당의 간부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이다. (4) 현 정권에 반대하는 대중정서는 취약하거나 김정일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억압받고 있다. (5)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서울이나 남한의 다른 표적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역공격을 즉시 감행할 것이다. (6)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폭탄 사용은 평양, 북한의 군부대 그리고 다른 표적들을 파괴할 수 있는 보복을 촉발시킬 것이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1) 북한에 상당한 불신과 적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남한은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2) 비록 러시아와 북한간의 유대감이 아직 강하고, 남한이 북한에 경제지원과 무역의 주 상대국이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제일 크고 정치·경제에서 가장 관계가 깊은 나라이다. (3) 일본은 북한과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식민지 지배의 대가로 많은 자금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4) 북중 접경지역은 겨울에 강이 얼고 전기가 부족해서 밤에 불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틈이 많다. (5) 중앙계획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는 수십년동안 경제왜곡과 소비자 불만족을 초래했으므로 일단 자유화가 되면 시장 경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6) 북한의 경제 개혁과 무역·투자 개방은 북한에 경제복지 향상과 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산 시설 대부분은 새로운 설비에 맞지 않아서 세계적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7) 북미간 불신은 깊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미국의 국익과 목표 하에서, 미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북한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부에 확신시킨다. (2) 군수경제와 민간경제 간에, 그리고 핵과 재래식 무기 간에 자원배분을 둘러싸고 정권내 분열을 조장한다. (3) 대안적인 권력을 양성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북한 내부에 정보 흐름을 증가시켜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평양의 통제 및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를 약하게 한다. (4) 불법행위를 통한 정부수입을 박탈한다. (5)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적당히 양보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경제전략은 북한이 국제무역, 투자 및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평양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세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자유화는 무역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자하는 의지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하여 주민의 관심을 국내문제로부터 외부로 돌릴 필요성도 감소시킬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미국의 국익, 목표, 가정, 전략 하에서 미국의 선택가능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제재와 협상 정책을 지속한다(6자회담을 계속하고, 제재를 유지하며, 무기, 마약, 화폐위조 등의 금지와 함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지속 강화한다).
- 북한에 네거티브한 압력을 강화한다(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 일본, 남한, 유럽의 대북무역을 제한하며, 대북투자를 저지한다).
- 장기적으로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포용정책을 확대한다.(제재완화, 개혁 장려 및 외국 투자를 허용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북한이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도록 한다).
- 정책 대안들과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결부시킨다.

## 2. 현행 미국의 정책

미국의 현행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다. (1) 6자회담을 통한 대북포용 (2) PSI를 포함한 비확산 노력 (3) 마약, 화폐위조, 금지품목 취급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는 국제적인 노력 (4)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제력으로 남한, 일본, 태평양에서의 미군 주둔 (5) 경제 제재 및 외교 고립 (6)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 (7) 국제 금융 기관 가입 불허.

2005년 9월, 미국은 애국법(Patriot Act)에 의거하여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로 인해 BDA는 미국 금융 기관과의 거래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이 결과 BDA의 북한계좌에 있는 2천 5백만달러가 동결되었다. 또한 마카오 정부로부터 BDA에 연쇄적인 제재조치를 초래하였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국제 거래 은행들도 북한과의 합법적인 무역거래조차도 거절했다. 북한은 중국과 같은 나라로 국제금융구좌를 옮기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중국도 금융제재에 동참하였다(북한이 2006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한 후).

과거, 북한 간부들이 사치품과 다른 수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던 BDA의 북한 자금이 동결되었고, 북한의 국제무역에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BDA 조치는 북한의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및 여러 나라들이 동참한 BDA 제재 조치와 중국의 압력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고 2·13 합의를 유도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2·13합의의 한 부분에는 미국이 30일안에 BDA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13 합의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동결하고,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신 남한은 5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선적할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은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북한이 핵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했다고 주장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정상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에 의거하여 북한과 일본은 현안(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양자회담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2·13 합의는 미국과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의 회담에서의 전략에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선 BDA 행위가 미국에 의해 6자회담 및 핵문제와 연계되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IAEA 요원을 복귀시키고 핵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BDA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합의에 동의하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BDA에 동결되었던 2천 5백만달러가 우선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합의는 또한 정권교체전략이 테이블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문제는 북한의 합의 이행여부이고, 미국, 중국, 다른 당사국들이 무슨 지렛대로 평양의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가 이다.

과거 4년의 경험에서 볼 때 명확한 것은, 평양의 트집 잡기와 미국의 양자 협상 거절이 평양이 핵프로그램을 추진할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실제로 핵 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가 있다.

북한은 핵 개발 이유가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고, 남한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를 사용하거나 미국이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본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핵프로그램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남한에 대해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하며,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평양이 이런 근본적인 핵 개발 이유에 대한 상당한 변화 없이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공격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북한이 악의 축에 포함되고, 부시 정부의 선제공격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평양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원조를 가져오기 위한 협상안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미국 정책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BDA 조치를 제외하고 경제제재는 거의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국은 일차적으로 미국이었다. 북한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와 제한적인 투자는 물론 교역도 지속하고 있다. 미국조차도 정치적인 고려로부터 인도주의적 원조를 분리하려고 한다. 제재에 대한 정책적인 의문사항은 경제제재가 실제로 북한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는지, 그리고 열악한 경제상황이 평양의 정책을 변화시켰는지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절대적인 궁핍을 겪었지만, 제재는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평양의 행동을 바꾸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배 엘리트와 군부는 희소한 식량과 생필품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지배계층에게 경제적인 특권을 주고 있다. 농민들은 굶주릴지도 모르지만, 서열이 높은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사치스러운 세계에서 살고 있다. 궁핍한 경제 상태가 또한 김정일 정권을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전문가들은 민주적인 쿠데타가 일어나기에는 내부 반대세력의 힘이 너무 약하고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통제력이 너무 강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평양은 그들의 경제에 해외투자를 받아들이고 보다 사적인 시장을 허용하는 절름발이식 조치를 시작했으나 이것은 중앙집권화된 경제에서 취해왔던 정책과 유사하다. 이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권고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북한 경제를 악화시켰던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피폐해진 북한 농업과 산업의 상황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주었다. 인도주의적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평양이 불법 마약거래와 미사일 거래를 이용해 무역적자를 만회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식량 부족은 중국과 남한으로의 대량 탈북자를 유발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미국은 그 문제를 UN으로 가져갔다. UN 안보리결의 1718(2006년 10월 14일)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촉구했고, 일부 제재를 부과했다. 결의안은 대북한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였고, 탄도 미사일 또는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있는 물자의 거래,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북한의 비핵재식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기타 금융자산을 동결시키고, 이런 사람들의 여행을 금지했다.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수를 줄이고, 북한 방문객 수를 축소시켰다. 또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고, 24품목의 사치품수출을 금지했다.

비확산과 관련해서 PSI에는 현재 60여개국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대량살상무기와 부속품의 거래를 금지시킨다는 것이 목표지만 선박을 검색하는 것은 북한이 불법 무기, 마약, 위조화폐를 밀수하는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북한과 테러에 관해, 미국은 과거 북한의 테러 행위 때문에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 북한을 계속 올려두었다. 북한이 남한 정부 관리들이 탄 비행기를 폭파한 것, 1960년대부터 일본 적군파를 은닉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려져 있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이유이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려놓겠다고 미국은 일본에게 확인해 주었다.

### 3. 6자회담

대북 포용정책은 6자회담과 북한 및 관련국가 간의 양자회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회담 당사국은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이다. 6자회담은 모든 당사자들을 테이블로 끌어내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의 부당함을 보여주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북지원의 주요 제공자인 일본과 남한을 포함한다.

<표 1>은 6자회담 당사자들의 우선순위와 협상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어떤 협상 패키지를든 각 국가의 우선순위를 최소한 반영해주어야 한다.

미국, 일본 및 러시아의 최우선순위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을 향해 발사되었던) 북한의 미사일과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무기확산을 금지하고, 일본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남한은 북한과의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 기조를 추구하며, 비무장지대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쉼노동력과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다.

평양의 주요 목표는 (1) 김정일 통치 하의 사회주의 지배체제 유지 (2)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의한 선제공격이 없다는 안전보장 약속 (3) 핵 프로그램의 기본 유지 (4) 미국, 일본과 외교관계 수립 (5)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한과의 통일 (6) 주체 철학을 유지하면서 침체된 경제를 위한 경제원조 획득이다. 김정일 정권은 부시행정부가 “악의 축”의 일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라크와 같은 군사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13 합의와 같은 정책패키지의 위험은, 일단 북한이 BDA 자금을 받고, 에너지 원조가 재개되면 핵개발을 폐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악으로 규정된 김정일은 여전히 영리하게 행동하여, 부시행정부가 북한 핵개발 포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일부 논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만약 평양이 합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긴장은 고조되고 군사조치와 같은 응징적 조치가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극한적인 조치가 없이는, 세계는 핵무장한 파키스탄, 인도 뿐만 아니라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배워야할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일본과 남한은 자신들도 핵 능력을 개발할지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한 이 정책이 보여주는 또 다른 위험은 미국이 북한의 협박에 넘어갔다고 간주되거나,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협상방안

국가	우선순위	협상방안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li> <li>비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과 체제보장</li> <li>경제원조</li> <li>외교와 무역관계정상화</li> </ul>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과 체제보장</li> <li>미국, 일본과 외교관계 수립</li> <li>북한 방식의 남한 통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무기와 미사일 폐기</li> <li>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완화</li> </ul>
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해결과 번영을 위한 기본 틀 구축</li> <li>통일</li> <li>북한 노동력 및 시장 접근, 한반도의 비핵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지원, 에너지, 기업 투자</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무기와 미사일 폐기</li> <li>일본인 납치문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정상화</li> <li>경제지원</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의 비핵화, 비확산</li> <li>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지속, 일본과 남한의 미국 동맹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지원</li> <li>동맹 지지</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핵무기 폐기</li> <li>동북아시아의 안정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충 외교</li> <li>에너지</li> </ul>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과 비교할 때 북한과의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무역과 외교 관계 개방은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지만, 특정 사안들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 4. 가능한 경제 유인책

2·13 합의는 북한에게 상당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중유제공, BDA 자금 동결 해제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부에서 북한 제외, IMF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제도로의 북한 가입 허용, 경제관계 정상화 등이다. 잠재적인 경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가. 외교 관계 정상화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미국, 일본 및 남한이 해당된다. 북한은 이미 중국, 러시아 및 유럽 연합과 외교 관계가 있다(런던에는 대사관도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규명, 일본을 향한 미사일 발사, 간첩행위 의혹, 마약밀수 선박의 일본영해 향해 등의 특정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관계정상화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결론이 나면, 일본은 북한에게 식민지 지배의 대가로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의 배상금을 제공할 것이다.

관계정상화는 국가간에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고, 외교관을 보내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차원의 접촉도 확대된다. 정상화된 관계는 북한 내, 그리고 해외에서도 모두 평양의 선전기제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화는 미국이 기꺼이 북한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관계 정상화 없이도 미국은 쿠바와 같이 유사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하바나에서의 미국임무는 스위스 대사관에 부여되었고, 정규대사관과 비슷한 규모로 직원을 운영한다(북한은 1991년 UN에 가입했고, 뉴욕에 대표부가 있다). 일본은 평양과 관계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담을 개시했고 남한은 외교관계를 맺고, 향후에도 통일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2007년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일간 양자회담은 납치문제로 결렬되었다.

## 나. 무역 협정 협상

미국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무역 협정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미국과 베트남간에 이루어진 2001년 양자무역 합의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무역 협정이 이행되면 각 국가는 북한에게 정상무역관계(최혜국대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 조치로 북한의 대미수출은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무역 협정은 투자와 기타 미국의 이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의 시장은 현재 작지만, 후에 재공업화하면 지역적으로 큰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유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증가된 부를 대중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 북한과의 무역관계 수립에 부정적인 측면은, 만일 이것이 다른 양보를 포함한 더 큰 패키지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미국은 최소이익을 위해 중요한 협상수단을 교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다. 미국의 제재 완화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유발했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북한의 다른 무역파트너들은 북한과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로 영향을 받는 것은 주로 미국 회사들과 무역업자들이다. 평양은 중국, 일

본, 남한, 유럽 등 세계시장 어디에서든지 외화를 쓸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면 미국기업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북한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라. 국제금융기구(IFIs)에 대한 북한 가입 허용

미국은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및 IMF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금융기구(IFIs)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평양은 특히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에 관심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IMF에 회원으로 먼저 가입되어야 한다고 IFI 절차에 규정되어 있다. IMF는 프로젝트나 차관 요구를 평가하기 위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 필요로 하는 특정 경제 자료를 요구한다. IFIs 회원국은 IFI가 방문, 조사,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고, 정보수집과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인센티브로서, 북한의 경제 체제 이행을 도와주기 위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특별 기금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기금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일본이나 남한에 의해 재원이 조달될 수 있다.

### 마.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북한 제외

미국, 일본 및 북한은 국제 테러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테러리스트 국가 명부에서 북한을 제외하기 위하여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일단 이 명단에서 지워지면, 북한은 미국의 대외원조를 받을 수도 있고,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차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국제금융기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수출통제 요구조건도 완화된다. 이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다음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 같다. (1) 더 이상 테러리즘과 관련되지 않고 있다는 서면 보장 제출 (2) 과거에 어떤 테러리스트 행위와도 연관되지 않았다는 증거 제시 (3) 국제 테러방지 협약 가입 (4) 과거 테러리즘 지원 문제 해소(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와 적군파 은닉)

## 5. 에너지와 식량 지원

2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 지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2·13 합의에서 남한의 자금지원으로 일부 중유를 북한에 보내기로 하였다.

## 부문별 주요동향 (5.1~5.31)

1. 대내경제	61
‘컴퓨터보험규정’ 채택	61
노동절 보고대회, “인민생활 향상, 국방공업 우선 발전” 강조	61
태양력발전 설비 도입	62
삼수발전소 준공	62
‘중소형발전소법’ 채택	62
제1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63
개천-태성호물길 잠진-대보 지선물길 공사 착공식 진행	63
‘상업은행법’ 제정	63
‘적십자회법시행규정’ 채택	64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확대	64
2. 농업 및 식량	65
WFP, “북, 더 많은 지역에 대한 식량지원 요청”	65
FAO, “북, 여전히 외부원조 필요한 식량위기국”	66
WFP, “호주, 대북 식량지원 기부”	66
유엔 사무차장,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 시행”	67
3. 대외경제	67
UNDP, “대북사업 마무리 작업 완료”	67
북, 미국에 주류 수출	68
3월 대중국 무역동향	68
북러, 근로협정 체결 예정	69
IFRC, 2006년 대북 1,180만달러 지원	69
2006년 대외무역실적	69
북, 미얀마에 무기 수출	70
중 언론, “중 지린성, 함북 온성에 ‘북중 자유무역시장’ 설립 추진”	71
북러, 북 철도 현대화 양해각서 체결	71
한국철도공사 등, 러시아와 나진-핫산 구간 철도 공동 개발	72
2007년 1/4분기 대중무역 실적	72
북러, 임업부문 의정서 체결	73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74
정부, 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	74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개최 .....	74
여당 방북단, “남북, 임진강·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키로” .....	75
1~4월 남북교역동향 .....	76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	76
대북 원자재 제공 등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집행 의결 .....	78
열차시험운행 실시 .....	78
북 화물선 부산항 첫 입항 .....	79
3개 경협합의서 발효 .....	79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개최 .....	80
정부, 대북 쌀 지원 유보 .....	80
한미 FTA 협정문 중 ‘부속서 22-다(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81
정부, “FTA 관련,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조건 충족 가능” .....	83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지정 .....	83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	84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85
일 언론, “일, 초기조치 불이행시 대북수출 전면 금지 검토” .....	85
북-이란, 협력강화 합의 .....	85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 ‘북,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	86
미, “일 납북자-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계 안할 것” .....	86
북 외무성 대변인, BDA 관련 입장 표명 .....	86
주한 미대사, “남북관계, 6자회담과 속도 맞춰야” .....	87
미 언론, “BDA 송금, 미 와코비아 은행이 중개” .....	88
북, ARF에 안보백서 제출 .....	88
미,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	89
국제앰네스티, 북한 보고서 발표 .....	89
외교통상부 장관, “BDA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 .....	90
미, “BDA문제 해결전 핵시설 폐쇄”, 북은 거부 .....	90
미 국무부, “북, 지난 1년간 인권개선 아무것도 안해” .....	91
러, 대북제재 이행 공식발표 .....	91

## 1. 대내경제

---

### ‘컴퓨터보험규정’ 채택

---

4월 21일 『민주조선』은 최근 내각에서 ‘컴퓨터보험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민주조선』은 이번 결정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 보험사업을 더욱 개선해 나갈 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 아울러 이번 결정은 컴퓨터보험을 조직할 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컴퓨터보험사업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신문은 밝힘. 신문에 따르면 결정에는 컴퓨터보험의 종류와 컴퓨터보험 대상, 보험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보험계약과 손해보상청구 및 보험손해보상 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제되었다고 밝힘. 신문은 본 규정에 대한 내각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인민경제의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설비와 컴퓨터에 기입된 자료와 자료 매체들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었다”고 밝힘(『민주조선』, 4.21).

---

### 노동절 보고대회, “인민생활 향상, 국방공업 우선 발전” 강조

---

5월 1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1일 5.1절(노동절)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갖고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럽순길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인 연대에 들어선 현시기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경제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높이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어 “자위적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인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를 반석같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럽 위원장은 또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알곡(곡물) 생산을 훨씬 높이며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경공업에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의 근로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연대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밝힘.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김중린 노동당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

---

### 태양력발전 설비 도입

---

5월 6일 『쿠키뉴스』는 6일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극심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태양력 발전 설비를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 신문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태양열 발전 도입을 결정했으며 태양열 발전 설비는 군부대부터 먼저 갖춰질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함.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북한 북부 지역을 시찰하면서 군부대에 전력 공급이 안돼 병사들이 TV 시청도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북한 지도부는 지난 3월 군부대에 “반드시 오락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함. 이후 지도부는 검토 끝에 서방으로부터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대량 구입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루 2~3시간 밖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 주민 대부분이 “우리나라엔 원래 전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체념하고 있다고 밝힘(『쿠키뉴스』, 5.6).

---

### 삼수발전소 준공

---

5월 9일 『중앙통신』은 9일 삼수발전소 준공식이 진행되었다고 전하면서 “삼수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원상대로 더 잘 보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삼지연지구의 전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 이날 준공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등과 618건설돌격대원들, 연관단위와 량강도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함(『중앙통신』, 5.9).

---

### ‘중소형발전소법’ 채택

---

5월 11일 『중앙통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중소형발전소법을 채택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중소형발전소법에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이용에서 나서는 원칙과 기본요구,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들이 규제되어있다고 밝힘. 통신은 중소형발전소법이 채택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의도에 맞게 중소형발전소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

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밝힘(『중앙통신』, 5.11).

---

### 제1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

5월 14일 『중앙통신』은 제1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었다고 밝히고 전람회장에는 “조선과 중국, 로씨야, 수리아, 도이쉴란드, 방글라데슈, 스위스,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뽀스까, 중국대북의 회사들에서 출품한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석유화학제품, 룬전기재, 의약품, 식료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고 보도. 전람회 개막식이 14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개막식에는 “내각 부총리 로두철과 무역상 림경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 소장 리학권, 무역부문 일군들,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고 밝힘. 조선국제전람회 사장 김동명은 개막연설에서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경제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중앙통신』, 5.14).

---

### 개천-태성호물길 잠진-대보 지선물길 공사 착공식 진행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40호는 『중앙방송』 15일자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에서 개천-태성호물길 잠진-대보 지선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착공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도. 이번에 착공한 개천-태성호물길 잠진-대보 지선 물길공사가 완공되면 평안남도 강서군과 천리마군, 대동군안의 농장들이 양수식 관수체계로부터 개천-태성호 물길을 수원으로 하는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로 바뀌게 되며 이 지역의 논과 밭에 대동강물을 자연흐름식으로 충분히 대주어 알곡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게 됨. 또한 대동1호 양수장의 대형 양수기와 전동기를 비롯해서 수십 대의 전동기, 양수기, 전기선 등을 쓰지 않게 되며, 수만킬로와트의 전력 뿐 아니라 막대한 노력도 절약하게 된다고 『중앙방송』은 밝힘(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40호).

---

### ‘상업은행법’ 제정

---

5월 16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민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업은행법’을 제정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등 금융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북한법연구회 장명봉 회장은 16일 “북한이 지난해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529호)으로 상업은행법을 채택(제정)했다”고 밝힘. 6장 57조로 구성된 상

업은행법은 “상업은행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는 상업은행업무에서 신용을 지키며 현대·과학화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함. 상업은행의 위상에 대해서는 “국가는 상업은행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재산제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혀 북한의 기존 중앙은행 단일체제에서 상업은행을 분리해 이원체제로 운영하도록 준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또 “상업은행은 유희화폐자금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거래자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규정. 『연합뉴스』는 상업은행의 주요업무도 예금, 대부, 결제 등 이외에 대외 결제, 외환업무, 금융채권 발행과 매매, 귀금속 거래업무, 고정재산 등록업무 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상업은행 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는 한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상업은행은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으며, 개인의 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예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업은행법의 전문은 앞의 경제자료 참조(『연합뉴스』, 5.16).

---

### ‘적십자회법시행규정’ 채택

---

5월 26일 『중앙통신』은 최근 내각에서 적십자회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결정에 의하면 적십자회법시행규정은 “적십자회법을 정확히 집행하며 적십자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이 통신은 전함. 적십자회법시행규정에는 규정의 적용대상과 적십자회의 지위, 적십자회의 활동원칙과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어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중앙통신』은 “적십자회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내각결정이 발표됨으로써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적십자회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보도(『중앙통신』, 5.26).

---

###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확대

---

5월 31일 『연합뉴스』는 31일 『조선신보』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광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조선신보』는 “국가관광총국에서 외국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여행상품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힘. 이

에 따라 북한은 올해 남포특급시,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봉산군, 황해남도 해주시, 평안남도 안주지구 등을 새롭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에 포함시키고 와우도유원지, 남포항 2호도크, 룡강온탕원(온천), 사리원 민속거리, 범안리 양어장, 봉산군 은정협동농장, 계남목장, 백상루, 칠성공원, 연풍중학교, 대각청년언제(독), 강원도 원산 농업대학과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을 참관지로 추가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조선신보』는 “국가관광총국은 올해에도 평양, 개성,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을 비롯한 수 많은 대상들에 대한 관광을 조직하고 있다”며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예술공연,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 관광총국 관계자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이름난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비롯한 특이한 명소들에 대한 방문과 봉사, 친절한 환대는 외국인들이 동방의 나라 조선(북)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조선신보』는 이어 “국가관광총국은 세계관광기구(WTO),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200여개 여행사와 연계 속에 관광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새 대상들에 대한 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조선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5.31).

## 2. 농업 및 식량

### WFP, “북, 더 많은 지역에 대한 식량지원 요청”

5월 10일 『노컷뉴스』는 북한 당국이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내 활동범위를 넓혀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세계식량계획 대변인 로빈 룿지이 밝혔다고 보도.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로빈 룿지 대변인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세계식량계획에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역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말하고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힘. 룿지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현재 북한 120개 군 가운데 오직 50개 군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면서 “WFP의 우려사안은 활동범위 바깥에도 분명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힘. 룿지 대변인은 “북한 내에서 WFP의 활동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며 이보다 앞서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원된 식량이 본래 의도했던 수혜자에게 정말 모두 다 전달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함(『노컷뉴스』, 5.10).

---

### FAO, “북, 여전히 외부원조 필요한 식량위기국”

---

5월 17일 『노컷뉴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곡물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가 절실한 ‘식량 위기국’으로 분류했다고 보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5월 발표한 ‘곡물전망과 식량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네팔과 파키스탄 등 33개 나라와 함께 ‘외부식량 원조가 필요한 위기국’으로 분류하고 북한은 식량 위기국 가운데 특히 ‘주민들이 식량에 잘 접근할 수 없는 나라’라고 밝힘. 이번 보고서의 북한 관련 부분을 작성한 식량농업기구 로마 본부의 쉐 팡 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약 100만톤에 달할 것”이라며 “최근 한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40만톤의 식량과 북한 당국의 식량 수입량 8만톤 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약 51만톤 정도의 식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 쉐 팡 FAO 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40만 톤의 쌀을 지원받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함(『노컷뉴스』, 5.17).

---

### WFP, “호주, 대북 식량지원 기부”

---

5월 18일 『노컷뉴스』는 호주 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세계식량계획에 지원한 규모는 150만달러로 북한 주민 70만명이 두 달 동안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세계식량계획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 호주 정부는 최근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연맹에 약 4백만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위해 150만달러가 지원됐다고 『노컷뉴스』는 전함. 세계식량계획 방콕 사무소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EA)에서 “호주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기부라면서 북한 주민 70만명이 두 달 동안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힘. 그러나 호주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부터 대북식량사업 목표액으로 1억 200만달러를 정했지만 1년이 넘는 지난 16일 현재, 겨우 2,300만달러를 모금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사업을 위한 모금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리슬리 대변인이 밝혔다고 『노컷뉴스』는 전함(『노컷뉴스』, 5.18).

---

**유엔 사무차장,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 시행”**

---

5월 30일 『연합뉴스』는 존 홀름스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이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 등을 고려해 식량과 종자, 예방접종 활동 등을 위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홀름스 사무차장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며 유엔개발계획(UNDP) 문제 등으로 유엔의 대북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을 통한 식량과 종자 지원, 예방접종 활동 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은 올해 북한의 보건과 식량, 농업부문 지원을 위해 800만달러를 배정했고 이중 310만달러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홍역 예방접종 활동에 할당됐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5.30).

### 3. 대외경제

---

**UNDP, “대북사업 마무리 작업 완료”**

---

5월 1일 『연합뉴스』는 데이비드 모리슨 UNDP 대변인이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북사업 마무리 작업은 완료가 됐다”며 “외부 회계감사는 이번 철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그는 대북사업을 중단하면서 각종 장비를 북한에 이양해 감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회계감사는 문서를 상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복사본을 많이 만들어 뒀고 컴퓨터 자료도 보충했다”며 “감사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고 밝힘. UNDP의 또 다른 대변인인 크리스티나 로니그로는 UNDP 사용장비의 북한 이양에 대해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됐던 장비나 물건들은 이미 북한 당국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라며 “세계 어느 곳이든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 사업 상대국가에 사업 관련 장비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양하게 된다”고 밝힘. 그는 “북한에 이양되는 물건들은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 등 소위 ‘사업자산’에 불과하다”고 강조. 그는 “UNDP 본부의 고유 자산인 컴퓨터를 포함해 회계감사를 위해 필요한 재정이나 직원 관련 문서, 사업현장방문 관련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은 모두 세계식량계획(WFP)의 보호 아래 있다”며 “대북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보호조치를 취해 놓은 만큼 북한 당국을 포함해 다른 곳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

### 북, 미국에 주류 수출

5월 3일 『한국경제신문』은 뉴욕에 있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2일(현지시각) 지난해 7월 평양소주 수입에 대한 미국 당국의 승인절차를 끝낸 데 이어 추가검토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북한에서 평양소주를 수입키로 확정, 1차 선적분이 지난달 9일 북한 남포항을 떠났다고 밝혔다. 1차 수입물량은 20피트 컨테이너 3개 분량으로 이르면 5월 중 미국에 도착, 6월부터 미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업체는 밝혔으며 미국에 수출되는 평양소주는 북한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알코올 농도를 2도 낮춘 23도로 제조된 수출용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소주인 평양소주는 이미 일본 중국 등에는 판매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덧붙였다(『한국경제신문』, 5.3).

### 3월 대중국 무역동향

통일부는 주간북한동향 제838호를 통해 3월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1억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4.9천만달러(전년 대비 38.2% 증가), 수입은 5.9천만달러(전년 대비 35.6%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힘. 대중국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광물성연료(석탄) 수출이 1.7천만달러(전년비 49.1% 증가)로 가장 큰 비중(수출총액 35.1%)을 차지하며 이어 광석 1.4천만달러, 의류 4.9백만달러, 철강 3.1백만달러, 목재류 2백만달러 등의 순서임. 대중국 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계류 수입은 6.4백만달러(전년비 21.2% 증가)로 가장 큰 비중(수입총액 10.8%)을 차지하며 이어 전기기기 4.5백만달러, 플라스틱류 4백만달러, 필라멘트 3.9백만달러, 무기화학물 2.7백만달러 등의 순서임. 통일부는 2007년 3월 북한의 대중국 무역 감소는 대중국 수입의 감소(전년비 35.6%)에서 기인하며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기기와 광물성연료 수입이 각각 전년비 47.0%, 91.8% 급감한데서 기인된다고 밝힘(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35호).

2007년 3월 북한의 대중국 무역 현황

(단위: 천달러, %)

	총액		수출		수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3월	108,473	△15.0	49,240	38.2	59,233	△35.6

---

### 북리, 근로협정 체결 예정

---

5월 10일 「연합뉴스」는 러시아 연방 이주청이 10일 러시아와 북한이 상대방 국가에서 일하는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법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근로협정을 곧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콘스탄틴 로모다노프스키 이주청장은 이날 정부 내각회의에 출석해 러시아와 북한간 국제적인 근로협정 체결 문제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간에는 상대방 나라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노동력에 관한 국제협정이 없다면서 조속한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 그는 이 협정을 통해 더 많은 양국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일할 수 있고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고 지적. 이주청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인은 2004년 1만4,700명에서 작년에는 2만1,7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 규모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주청은 북한과의 근로협정 체결로 불법 이주도 막고 부족한 노동력을 북한인들로 합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0).

---

### IFRC, 2006년 대북 1,180만달러 지원

---

5월 17일 「노컷뉴스」는 국제적십자자연맹이 지난 한해 동안 모두 1,180여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국제적십자자연맹 에바 에릭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모두 1,180여만달러를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사업에 집행해 북한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북한의 12개 도 지역 중 5개 지역 876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보건과 재난방지 사업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에릭슨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적십자자연맹이 중점을 둔 재난 대비와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구호 활동에 북한 당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슨 담당관은 “국제적십자자연맹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북한 조선적십자사는 긴급 재난 발생때 배포 가능한 1만9천 가구분의 구호물품을 확보해 둔 상태지만 아직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전함(「노컷뉴스」, 5.17).

---

### 2006년 대외무역실적

---

통일부는 주간북한동향 제840호를 통해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이 30억달러

(전년 대비 0.2% 감소)였다고 밝히고 이중 수출 9.5억달러(전년 대비 5.2% 감소), 수입 20.5억달러(전년 대비 2.3% 증가)를 각각 기록하였다고 보도. 무역수지는 -11억 2백만달러(전년 -10억 5백만달러 대비 9.7% 증가)였으며 남북교역액은 13.5억달러(2005년 10.6억달러 대비 27.8% 증가)였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30억달러로, 2000년 이후 계속된 북한의 대외무역 상승세가 주춤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평가. 2006년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예년과 같이 중국, 태국, EU, 러시아, 일본 등으로 중국과 태국과의 무역액은 각각 7.5%, 13.7% 증가하였으나(무역비중은 중국 56.7%(전년 52.6%), 태국 12.5%(전년 11.0%)) EU, 러시아, 일본과의 무역액은 각각 19.9%, 9.3%, 37.2% 감소(무역비중은 EU 9.1%(전년 7.8%), 러시아 7.0%(전년 7.7%), 일본 4.1%(전년 6.5%))하였다고 밝힘. 2006년 북한의 대중국·태국의 무역집중도는 69.2%로 전년 63.6%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조치로 인하여 북한이 무역 상대국을 전통적인 우호국인 중국과 태국에 집중한 결과라고 통일부는 밝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상품 전시회·투자설명회 참가 및 무역의 다양화·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왔는 바,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통일부는 전망(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40호).

#### 2006년 대외무역 실적

(단위:백만달러, %)

	총액		수출		수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6년	2,996	-0.2	947	-5.2	2,049	2.3
2005년	3,002	5.1	998	-2.1	2,003	9.1

자료: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40호

#### 북, 미얀마에 무기 수출

5월 22일 「경향신문」은 북한이 지난 4월말 외교 관계를 재개한 미얀마에 자동소총 등 소화기를 수출했다고 22일 「요미우리(讀賣) 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 신문은 미얀마의 외교 소식통 및 미얀마 항만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화물선 강남 1호가 지난 20일 수도인 양곤에 도착해 21일부터 하역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작년 10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제 탱크와 공격 헬기 등 대형 재래식무기와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화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임(「경향신문」, 5.22).

---

**중 언론, “중 지린성, 함북 온성에 ‘북중 자유무역시장’ 설립 추진”**

---

5월 24일 「한겨레신문」은 중국 반관영 통신사 「중국신문」의 23일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 지린성이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역에 세번째 북중 자유무역시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남양노동자구역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투먼을 마주보는 자그마한 마을로, 두 곳은 철도와 도로로 연결돼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 「중국신문」은 “(이 지역에 자유무역시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시장을 개척하고, 두만강 하류에서 북-중-러 3국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남양노동자구역에 자유무역시장이 들어서면 증명서를 소지한 제3국인도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신문은 밝힘. 지린성은 이미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온성군도 최종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중국신문」은 밝힘. 지린성은 훈춘과 통화가 마주보는 북한 쪽에도 자유무역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신문」은 덧붙임(「한겨레신문」, 5.24).

---

**북러, 북 철도 현대화 양해각서 체결**

---

5월 28일 「동아일보」는 27일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4월 말에 평양에서 진행된 러시아 철도회사와 북한 철도성 대표들의 협상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이 각서로 러시아의 하산역부터 북한 나진항까지의 약 55km 철도구간 현대화를 위한 합영기업을 창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나진-하산 철도구간 현대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해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의 첫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러시아는 나진~하산간 철도가 연결되면 나진항에 위치한 정유공장인 승리화학공장을 개보수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뒤 이 중 일부는 북한이 사용하고, 일부는 러시아로 다시 수입하는 형식의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덧붙임. 또 청진에서 나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송전망을 연결해 북한에 전력을 수출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은 2002년 북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북핵문제로 무산된 바 있으며 당시 러시아는 대북 송전망을 청진에서 평양을 거쳐 한국으로 연결해 한국 측에 전력을 수출하는 방안도 제안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러시아 측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들 사

업에 한국이 동참해 일정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TSR와 TKR의 연결 및 대북 송전망 건설의 이익이 한국에 돌아가는 만큼 한국측이 사업에 참여해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한편 러시아는 28일 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러포럼에 보리스 포트노프 한러 경제공동위 부위원장과 알렉세이 아베린 철도청 국제협력국장을 파견해 철도 연결 및 대북 송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 측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TSR와 TKR 연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 철도 현대화는 최대 8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러시아와 북한 청진 간 송전망 건설 역시 1조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는 이들 사업의 시장성을 고려해 참여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 간 협이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함(『동아일보』, 5.28).

---

### 한국철도공사 등, 러시아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공동 개발

---

5월 29일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철도공사와 물류회사 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장금상선, 우진글로벌이 러시아철도공사와 손잡고 북한 나진항과 나진-하산(러시아) 구간 철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북한 나진항을 물류 거점으로 삼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한 철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29일 “러시아철도공사와 한러 합작 물류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며 “북한 나진항을 공동 개발해 물류 거점으로 삼고 내년 초부터 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현대·기아자동차 및 부품과 LG 가전제품 등을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실어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 경우 해운만 이용할 때보다 물류 비용과 시간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한러 합작 물류회사(가칭)는 한국철도공사 및 4개 물류회사가 40%, 러시아철도공사가 60%의 지분을 투입해 이르면 6월 중 설립된다고 이 신문은 전함. 다른 관계자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우리측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철도 개·보수에 7,000만달러, 나진항 현대화에 8,000만달러의 초기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은 덧붙임(『한국경제신문』, 5.29).

---

### 2007년 1/4분기 대중무역 실적

---

통일부는 주간북한동향 제841호를 통해 2007년 1/4분기 북중무역 총액이 3.3억달러(전년 대비 13.8% 증가)로 수출 1.3억달러(전년 대비 45.3% 증가), 수입 2억달러(전

년 대비 2.4% 감소)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7.4천만달러 적자(전년 1.2억 달러 적자 대비 61.3%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북한의 주요 대중수출 품목은 광물성 연료 4.5천만달러(전년비 49% 증가)로 대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동기 대중 수출액의 34.7%)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광석 3.3천만달러, 의류 1.2천만달러, 철강 7.7백만달러, 어류 6.2백만달러 등을 차지.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3.1천만달러(전년비 42.5% 감소)로 대중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동기 對中 수입액의 15.8%)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기계류 1.7천만달러, 전기기기 1.6천만달러, 필라멘트 1.1천만달러, 플라스틱류 1천만달러 등을 차지하였다고 통일부는 밝힘. 1/4분기 북한의 대중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 이는 핵실험 이후의 북중무역 증가세가 올 1/4분기에도 계속된 결과라고 통일부는 밝힘. 대중 수출의 주요 품목은 석탄, 광석 등의 광물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증가에서 기인하며 대중 수입의 주요 품목은 에너지, 전기기기, 기계류 등이 차지, 이는 북한 내 소비시장의 확대로 경공업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고, 산업개건·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수입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통일부는 덧붙임. 한편 통일부는 전년에 이어 올 1/4분기에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상은 계속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상황으로 미루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41호).

2007년 1/4분기 대중무역 현황

(단위:천달러, %)

	총액		수출		수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월	128,696	36.2	44,007	63.7	84,689	25.2
2월	94,404	27.0	35,632	36.1	58,772	22.0
3월	108,473	△15.0	49,240	38.2	59,233	△35.6
계	331,573	13.8	128,879	45.3	202,694	△2.4

**북러, 임업부문 의정서 체결**

통일부는 주간북한동향 제841호를 통해 북한이 5월 22일 평양에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힘. 23일 『중앙통신』은 박재춘 임업성 부상과 이완 마쵸로브 공업동력성 부상이 각각 의정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러 임업분과위원회’는 구 소련 붕괴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2년 7월 재개된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8개 소위원회 중 하나로

북러 양국은 제1~3차 경제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업·석탄·교통·극동·과학기술·경공업·무역·금융 및 채무 등 8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힘. 협의체는 아무르주 등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양자간 별목 협력사업 문제 등을 논의하며 1997년 9월 제1차 회의 이래 모스크바와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고 전함. 통일부는 이번 '북러 임업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특히 하바로프스크, 아무르)에서의 북한 별목노동력 송출문제, 목재생산 및 분배문제 등과 함께 향후 북-러간 임업부문에서의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의정서를 채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1995년 2월 '러시아 영토 내의 통나무 생산, 목재의 종합적 가공, 산림복구 및 협조에 관한 협정' 및 2002년 4월 '아무르 지방에서의 별목량 확대 협정' 등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통일부는 덧붙임(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41호).

####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정부, 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5월 2일 「내일신문」은 질병관리본부가 말라리아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북한에 모두 141만2,000달러 규모의 치료약과 모기장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고 보도. 말라리아는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북한지역에 대한 방역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임. 이번에 지원을 받는 북한 지역은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이며 주민 500만명에 대한 예방투약 및 치료용 약품과 모기장 5만장, 관리요원 교육훈련비 등이 지원된다고 이 신문은 전함. 이번 지원은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물품은 이날 인천항을 출발해 북한 남포항으로 전달된다고 이 신문은 전함. 한편, 북한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00년에 20만4,428명에서 2003년 6만559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난해는 9,353명으로 1만명이하로 감소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내일신문」, 5.2).

#####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개최

5월 4일 통일부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히고 협의에서 도출된 공동보도문을 발표(통일부, 5.4)

< 공동보도문 >

남과 북은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2007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및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6월27일 인천항↔ 남포항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2.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3.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홍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첨부: 관련 자료 목록)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홍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5.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4일

개 성

여당 방북단, “남북, 임진강·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키로”

5월 6일 『한국일보』는 2일부터 나흘 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 온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이 6일 “임진강·한강 하구와 예성강 하구를 개방, 공동 이용하는 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서울-개성 남북평화대수로 개통과 해양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남북은 이를 위해

남북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남북협력사업단(가칭)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추진단장인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강 하구 공동 이용 이외에 ▲신 황해권 경제특구와 해주시 주변 중공업단지 조성 ▲단천지구 광물자원 공동개발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가입 ▲북한 축구선수의 남한 K리그 진출 등을 추진·협약키로 했다고 밝힘. 김혁규 의원은 “북한은 BDA 자금 이체 문제가 해결되면 2·13합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특히 북한이 북미 수교를 희망하고 있어 남한이 적극 돕기로 했다”고 설명고 이 신문은 전함(『한국일보』, 5.2).

### 1~4월 남북교역동향

5월 9일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1~4월중 남북간 상업적 교역은 3억 4,699만달러로 전년 동기 2억4,336만달러 대비 43% 증가했다고 보도. 아연과, 모래,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역과 신발, 의류 등의 개성공단 생산품 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등의 위탁가공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고 통일부는 전함. 한편, 정부 및 민간의 대북지원 등 비상업적 교역은 24% 감소되어 전체 남북교역은 4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 통일부는 2007년 5월 이후 남북교역은 남북경협 확대 등에 따라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산 철강금속 및 광산물의 국내수요 증가, 개성공단 업체 추가 가동, 민간 및 정부의 대북지원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통일부, 5.9).

1~4월중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경제협력	대북지원	사회문화	합 계
교역액	123,377	85,598	118,011	20,008	63,992	11	410,997

###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5월 11일 국방부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와 5개항의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다고 밝힘(국방부, 5.11).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 합의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11일

판문점

---

### 대북 원자재 제공 등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집행 의결

---

5월 15일 『경향신문』은 정부는 1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북 식량 차관 40만톤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의결했다고 보도. 남북이 지난달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3차 회의에서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채택하고 17일 열차시험운행으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합의서가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임. 정부는 국내산 15만톤과 외국산 25만톤 등 차관용 쌀 40만톤 구입비로 1억5,400만달러를, 수송비 등 부대경비로 186억원을 협력기금으로 집행키로 했으며 쌀 구입비는 톤당 380달러로 책정됐다고 이 신문은 전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13 합의 이행 상황에 따라 쌀 지원의 속도와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으며 또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의류·비누·신발 등 경공업 제품 원자재 구입 및 제공비로 800억원을 협력기금에서 집행키로 의결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한편 정부는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의 남측 이행기구 역할을 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칭)에 대한 위탁수수료(13억원)와 지하자원 개발 현지조사비 등 사업비(27억7,800만원)를 무상 지원키로 했으며 이 협회는 열차시험운행 직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통일부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함(『경향신문』, 5.15).

---

### 열차시험운행 실시

---

5월 17일 『연합뉴스』는 남과 북의 디젤기관차가 이날 오전 11시 30분을 전후해 각각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을 출발하며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었으며 경의선을 따라 올라간 남측 열차(기관사 신장철)는 낮 12시 18분께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북측 기관차 ‘내연602호’(기관사 로근찬)는 12시 21분께 동해선의 MDL을 통과했다고 보도. 경의선에는 이재정 통일장관과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이철 철도공사 사장, 북측의 권호웅 내각책임참사 등이, 동해선에는 이용섭 건교부 장관과 조일현 건설교통위원장, 북측의 김용삼 철도상 등이 함께 탔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경의선 열차는 도라산역을 거쳐 총 27.3km를 달려 오후 1시를 전후해 종착역인 개성역에 모습을 드러냈고 동해선 기관차는 모두 25.5km를 달려 낮 12시 34분께 남측 제진역에 도착. 한편, 열차 운행에 앞서 오전 10시 45분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는 각각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공식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재정 장관은 경의선 기념행사에서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적 물류망을 형성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측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축사에서 “앞으로도 북과 남이 물고기는 통일의 기관차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궤도를 따라 달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특히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겨레는 더 큰 하나가 돼 민족공조의 궤도를 따라 달려야 하며 절대로 탈선하거나 주춤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북측 금강산역에서 열린 동해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시험운행이 남북철도의 완전한 연결을 앞당겨 계속해서 남으로, 북으로 열차가 오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남북철도공동운영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경의선·동해선 개통 준비를 서둘자고 제의했으며 북측 김용삼 철도상은 “북녘의 금강산역을 떠나는 동해선 시험운행 열차는 남녘의 제진역에서 멈춰서게 되지만 멀지 않은 앞날에 삼천리 강토를 내달리는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7).

---

### 북 화물선 부산항 첫 입항

---

5월 19일 『세계일보』는 북한 화물선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부산과 함북 나진을 잇는 컨테이너 정기항로에 취항한다고 보도. 그동안 부산~나진, 인천~남포 등 한국과 남북한 항구를 부정기적으로 오간 중국 등 제3국 국적의 화물선은 있었지만 북한 국적의 선박이 정기항로에 취항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임. 18일 국보해운(주)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북한국적 1,800톤급 화물선 강성호(선장 강혜경·61)가 최근 신설된 부산~나진(직항로 830km) 정기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지난 17일 남포항을 떠나 남하 중이라는 것. 이번 북한 선박 취항은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국보해운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산하 G총회사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이뤄졌다고 이 신문은 전함. 선원 24명과 민경련 직원 3명 등 27명이 탑승한 강성호는 19일 오후 부산 남외항에 도착, 입항 절차를 밟은 뒤 21일 오전 감천항에 입항할 예정. 강성호는 매달 3차례씩 열흘 간격으로 남북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게 되며 이 컨테이너선은 주로 북한의 농림수산물을 싣고 온 뒤 한국의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생활필수품을 싣고 올라갈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세계일보』, 5.19).

---

### 3개 경협합의서 발효

---

5월 21일 통일부는 남북 사이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합의서

가 5월 22일 공식 발효된다고 밝힘.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5월 17일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를 오는 22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발효문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바 있으며, 22일 대북 발효문본 전달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는 대내 공포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힘. 이번에 발효되는 합의서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추위 제12차 회의, 2006.6.3~6)',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수정·보충합의서' 및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경추위 제13차 회의, 2007.4.18~22)' 등 3개 경험합의서라고 통일부는 밝힘. 이번 경험합의서에 대한 발효조치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2006.6.30) 이후, 이 법에 따라 취해지는 첫 번째 조치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통일부는 평가(통일부, 5.21).

---

###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개최

---

5월 23일 통일부는 남과 북이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쌍방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 품목, 수량, 가격문제와 지하자원 개발 관련 현지 공동조사, 대가 상환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덧붙였다. 남과 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관련 세부적인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통일부는 전함(통일부, 5.23).

---

### 정부, 대북 쌀 지원 유보

---

5월 25일 「한국일보」는 정부가 이달 말부터 하기로 했던 대북 쌀 지원을 북한의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때까지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이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측이 우리측에게 대북 쌀 지원 유보를 요청하는 미국 정부의 뜻을 전달한 것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정부 당국자는 24일 “정부 내에 이견이 있었지만 안보장관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차관 제공 속도를 조절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이 당국자는 이어 “미 대사관의 조셉 운공사참사관은 수시로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을 만나 (쌀 차관 제공에 유보적인) 미국 정부의 뜻을 전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를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이날 대변인담화를 통해 “최근 남조선 반통일 세력들이 북남 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악담을 마구 지껄이고 있다”면서 “북남 협력사업을 핵문제와 연관시키고 누구의 개

혁·개방까지 들먹이면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함(「한국일보」, 5.25).

**한미 FTA 협정문 중 '부속서 22-다(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5월 25일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2일 타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을 공개. 이 중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부속서인 '부속서 22-다(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전문(국문 및 영문)은 다음과 같음(외교통상부, 5.25).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국문>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미합중국의 상응하는 이익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 기념일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한다.
4.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 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5.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에게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

ANNEX 22-C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영문>

1. Recognizing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al mandate and security interests, and the corresponding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mittee shall review whether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ppropriate fo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outward processing zones.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officials of each Party. The Committee shall meet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at least once annually thereafter, or at any time as mutually agreed.

3. The Committee shall identify geographic areas that may be designated outward processing zones.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criteria that must be met before goods from any outward processing zone may be considered originating good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gress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mpact of the outward processing zones on intra-Korean relations; and the environmental standards, labor standards and practices, wage practices and business and management practices prevailing in the outward processing zone, with due reference to the situation prevailing elsewhere in the local economy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4.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whether any such outward processing zone has met th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also establish a maximum threshold for the value of the total input of the originating final good that may be added within the geographic area of the outward processing zone.

5. Decisions reached by the unified consent of the Committee shall be recommended to the Parties, which shall be responsible for seeking legislative approval for any amendments to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outward processing zones.

---

**정부, “FTA 관련,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조건 충족 가능”**

---

5월 25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2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이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고 보도. 정부는 이날 한미 FTA 협정문 및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OPZ 지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부과한 것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며 또한 충족 가능한 과제”라고 밝힘. 한미 양국은 FTA 부속합의서를 통해 OPZ 설립 등을 검토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 뒤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이날 공개한 부속서에 따르면 OPZ 지정 기준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OPZ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돼 있어 추가 조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정부는 기준 충족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핵 2.13합의에 따라 해결과정이 진행중인 만큼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며 OPZ지정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 정부는 또 “환경기준은 개성공단이 우리 공단 못지않게 엄격한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족이 가능하며 노동 및 임금 조건은 임금직불 문제를 포함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 특히 환경, 노동, 임금 조건 등과 관련, 부속서에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히 참고한다’고 돼 있어 북한의 특수성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정부는 개성공단이란 명칭이 협정문에 없는 것에 대해 “명칭을 협정문에 특정화하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3자인 북한에 협정문상 명시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면 다른 WTO 회원국도 동등한 특혜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25).

---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지정**

---

5월 28일 통일부는 정부가 5월 28일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 박홍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을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힘. 이행기구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총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전함. 협회는 경공업 협력과 관련하여 원자재 제공규모·가격·방

식 등을 북측과 협의·확정하고, 원자재 구매·수송 및 상환, 경공업 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대북협의, 타당성 조사,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통일부는 밝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누세제협회 등 경공업 및 지하자원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공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통일부 허가 법인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임. 한편 정부는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할 우리측 이행기구가 지정됨에 따라, 5월 29일 북측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남북간 합의한 일정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통일부, 5.28).

###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6월 1일 『연합뉴스』는 5월 29일부터 개최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대북 쌀 차관 제공 지연 문제에 막혀 성과없이 종결되었다고 보도. 『연합뉴스』는 남북이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쌀 차관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북측의 완강한 식량 제공요구에 따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임(『연합뉴스』, 6.1).

####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1일

서울

##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일 언론, “일, 초기조치 불이행시 대북수출 전면 금지 검토”

5월 10일 『연합뉴스』는 이날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영변의 핵시설 정지 등의 ‘초기단계 조치’를 계속 불이행할 경우 일본 정부가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추가제재조치 내용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등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수출금지 조치를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에서 전면적인 수출금지로 강화하고 ▲입항금지 선박의 대상을 ‘북한선박’은 물론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으로 확대하고 ▲자금이전금지 조치의 대상을 현재의 15개 단체 1개인에서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향후 북한의 동향을 확인한 뒤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대북제재 강화안 발동을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한편 『연합뉴스』는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외상이 9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향후 1주일 이내에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관계국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임(『연합뉴스』, 5.10).

### 북-이란, 협력강화 합의

5월 11일 『문화일보』는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이 10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력강화에 합의했다고 보도. 이란 관영통신 IRNA는 이날 파르비즈 다부디 부통령이 이란을 방문 중인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하고 경제·산업부문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보도. 다부디 부통령은 이 회담에서 “이란과 북한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누리고 있으며, 이란이 평양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면서 북한과의 경제·사회간접투자·기술부문 협력의사를 표명했다고 IRNA는 전함. 이에 김 부상은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은 모든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미국처럼 약자를 괴롭히는 강대국도 진보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면서 “투자·건설부문에서 이란의 경험을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학생통신 ISNA는 보도. 한편, 지난 7일부터 이란을 방문중인 김 부상은 마누셰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과도 면담할 계획이며 북한과 이란은 1973년 수교 이래 경제·군사분야를 중심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1989년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

은 덧붙임(『문화일보』, 5.11).

---

###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 '북,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

5월 11일 『노컷뉴스』는 국제 민간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권 탄압국 8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보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2007' 이라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버마, 쿠바,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8개 국가를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고 지목.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일상생활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하고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끔찍한 환경 속에 수용돼 있다고 밝힘.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해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국가로 지목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함(『노컷뉴스』, 5.11).

---

### 미, '일 납북자-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계 안할 것'

---

5월 13일 『연합뉴스』는 12일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일본측에 밝혔다고 보도. 이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이 법률상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아베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뿐 아니라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유감스러우며, 향후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서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5.13).

---

### 북 외무성 대변인, BDA 관련 입장 표명

---

5월 15일 『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이 동결되었던 자금송금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고 보도.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일부 언론기관들이 마카오아시아태타은행에 동결되었던 (우리)자금송금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계속 요구도수를 높이면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와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당치않은 소리라고 밝힘. 대변인은 "금융제재해제와 관

런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는 처음부터 일관하다"고 밝히면서 "우리에 대한 금융제제가 해제되는 조건에서 초기단계조치들에 관한 2.13 합의리행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있다"고 강조. 대변인은 "종전과 같이 자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한 제재해제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마카오아시아델타은행에 있는 자금을 제3국에 있는 우리 은행구좌에 송금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힘. 대변인은 "자금송금이 실현되면 우리는 곧바로 2.13합의에 따르는 핵시설가동중지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국제원자력기구실무대표단도 즉시 초청할 것이며 미국측과는 핵시설가동중지 후 단계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밝힘. 대변인은 "2.13합의가 일단 리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행동을 통하여 명백하게 보여질 것이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한편 이러한 북한 외무성 발언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신속한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고 16일 『노컷뉴스』는 보도. 케이시 부대변인은 북한이 마카오 금융당국자 등을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것은 복잡한 기술적 장애 때문이며 '북한이 고의로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은 '아니다'고 밝힘.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BDA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이 2.13합의를 준수할 것이란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노컷뉴스』는 전함(『중앙통신』, 5.15, 『노컷뉴스』, 5.16).

---

### 주한 미대사, "남북관계, 6자회담과 속도 맞춰야"

---

5월 16일 『한국경제신문』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하루 앞둔 16일 남북관계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다시 우회적으로 제기했다고 보도.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은 매우 좋은 출발이며 정기 운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시험운행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힘. 그는 하지만 "남북화해와 6자회담 등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보도. 이에 이 장관은 "시험운행은 역사적 사건이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시험운행) 행사에 버시바우 대사를 동반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곧 열차를 탈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북 쌀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북한의 경제 재건과 발전을 돕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두 정부 간 이견은 없으며 오늘 이 장관

을 만나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밝힘. 한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남북을 연결한 철길은 물자뿐 아니라 대규모의 남북 주민들이 왕래하는 통로가 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 청와대는 특히 “인천~남포 간 TEU(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분)당 왕복 물류비용이 현재 해상운송으로는 5~6일간 800달러가 드는 데 비해 철도로 운송하면 3~4일간 200달러로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철도가 개통되면 남북 간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한국경제신문』, 5.16)

---

### 미 언론, “BDA 송금, 미 와코비아 은행이 중개”

---

5월 17일 『경향신문』은 17일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인용하여 미 행정부로부터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송금 제안을 수락한 미국 은행은 와코비아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워싱턴포스트』는 17일 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와코비아 측이 BDA 북한 자금 송금을 중개해달라는 국무부 요청을 일단 받아들여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보도. 와코비아 은행에 중개 요청을 한 것은 BDA 조사를 전담했던 재무부가 아니라 국무부이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 방안을 적극 지지했으며,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BDA 송금을 중개할 미국은행을 직접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함. 와코비아 은행의 크리스티 필립스 브라운 대변인은 “우리는 감독당국(재무부)의 적절한 승인이 없었다면 국무부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 신문은 그러나 와코비아가 송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BDA를 미국 법에 근거해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했던 재무부의 ‘특별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아직까지 법적·기술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함.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본사를 둔 와코비아 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77억9,000만달러로 종업원 11만명을 두고 있는 미국 내 굴지의 은행이라고 『경향신문』은 덧붙임(『경향신문』, 5.17).

---

### 북, ARF에 안보백서 제출

---

5월 18일 『연합뉴스』는 이르린다 바실료 필리핀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한 18일 『AP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처음으로 동남아안보포럼(ARF)에 안보백서를 제출했다고 보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 오는 8월 ARF총회에 앞서 내주 ARF 고위관계자회의를 개최하는 필리핀의 바실료 차관은 이날 “북한이 처음으로 그들의 안보백서를 ARF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27개 회원국들

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힘. 아세안과 한중일은 물론 이 지역의 안보에 관련되는 27개국들이 참가하는 ARF에 지난 2000년 가입한 북한은 모든 회원국들이 해마다 제출기로 되어있는 안보백서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안보백서는 회원국들이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각국의 안보개관과 예상되는 위험요소 등을 기록하는데 제출 여부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북한이 제출한 백서를 읽어 본 한 관계자는 “이번 백서에는 특별히 놀랄 만한 내용은 없다. 그저 그동안 공식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언론을 통해 나온 예기들을 종합해 놓은 정도”라고 공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8).

---

### 미,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

5월 22일 『한겨레신문』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해 21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관보에서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행정명령 11958조에 따라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테러 방지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해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힘. 관보는 이 결정은 5월 14일자로 효력이 발효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미 국무부는 해마다 테러지원국 명단과는 별도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을 지정·발표해왔으며, 북한은 최근 수년간 계속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또한 신문은 북한이 각종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의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은 덧붙임(『한겨레신문』, 5.22).

---

### 국제앰네스티, 북한 보고서 발표

---

5월 23일 『국민일보』는 국제앰네스티가 23일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식량부족, 공개처형 등 여전한 북한의 인권상황은 아직도 열악하다고 밝혔다고 보도.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탈북자 문제, 식량난, 강제실종, 방문거부, 표현의 자유, 사형제 문제 등을 다뤘으며 앰네스티측은 “탈북자 가족들이 실종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한 탈북자는 북한에 있던 가족, 친구 19명이 실종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10만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숨어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50~300명 정도가 매주 북한으로 송환되며 이들 중 수백명의 행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앰네스티측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본부에서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북한 관련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임. 보고서는 북한 식량난에 대해서도 “몇 차례 흉수 때문에 농작

물 수확이 그 전 해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의 12%가 굶주리고 있다”고 밝힘. 헌법에만 보장된 종교자유를 포함한 통제된 언론 문제, 공개처형 등의 문제도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국민일보』는 전함(『국민일보』, 5.23).

---

### 외교통상부 장관, “BDA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

---

5월 23일 『서울경제신문』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23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해제문제와 관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갖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방향은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그는 그러나 “그것이 언제 해결될 것이라는 시간표를 정하기에는 빠르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해결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서울경제신문』은 전함. 송 장관은 또 이날 오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BDA문제 해결방안과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 송 장관은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 촉진은 서로 선순환되게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서울경제신문』, 5.23).

---

### 미, “BDA문제 해결전 핵시설 폐쇄”, 북은 거부

---

5월 30일 『동아일보』는 북한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9일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북한은 핵 시설 폐쇄 조치를 먼저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힐 차관보는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역시 BDA 문제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BDA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 두고 먼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문을 허용하고 핵시설을 폐쇄한다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30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BDA에 묶인 북한 자금의 동결 해제 등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30일 『한국일보』는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BDA)의 북한자금을 송금할 중계은행으로 다시 중국은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29일 면담한 하산 위라주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힐 차관보는 중국이 중계은행을 제공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당초 미국의 와코비아 은행을

중계기지로 검토했으나 북한자금 거래금지를 규정한 애국법 311조 등 법률적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국일보』는 전함. 한편, 이에 대해 북한의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BDA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힐 차관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6월 1일 『연합뉴스』는 보도. 김 차석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백했다”며 “BDA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해 2.13 베이징 합의이행에 BDA의 북한 자금 2,500만달러 송금문제의 해결이 선결조건임을 설명. 김 차석대사는 특히 2.13 합의 이행에 관한 북측의 의지가 여전히 확고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BDA 자금송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 김 차석대사는 BDA의 북한 자금 송금 지연과 관련, “미국측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BDA 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밝힘. 한편 공석용 북한 외무성 부상도 방북중인 독일연방하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BDA 자금 송금문제 해결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 2.13합의 내용의 이행에 절대적인 선결조건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동아일보』, 『한국일보』, 5.30, 『연합뉴스』, 6.1).

---

### 미 국무부, “북, 지난 1년간 인권개선 아무것도 안해”

---

5월 31일 『연합뉴스』는 미국 국무부가 30일 북한이 지난 1년간 심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보도. 국무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미 대북인권특사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행위는 북한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 보고서는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과 종교, 집회, 출판, 공정한 재판, 이동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김정일 측근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 보고서는 또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특사가 미국으로 오는 북한 난민들을 환영해왔고 북한의 인권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소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31).

---

### 러, 대북제재 이행 공식발표

---

5월 31일 『문화일보』는 북한이 영변원자로 폐쇄 등 2.13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고 공식발표했다고 보도. 30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일본 『교도(共同)통신』, 미국 『UPI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7일 “러시아 관할내 모든 정부 기관과

산업, 무역, 재정, 교통 및 여타 기업과 은행, 기관들과 법인 및 개인들에게 북한과 거래를 할 때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는 것. 러시아의 조치에는 유엔결의 1718호가 규정한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의 발표에는 금수조치의 경우 이미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시작됐으며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명기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특히 "러시아 연방 내 모든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북한에 전차, 헬기, 전투기, 전함, 장갑차, 중화기, 미사일 발사대를 수출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어떠한 물질의 대북 반입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또 러시아의 선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한 이들 물품의 대북 이전도 금지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함.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나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열차 기술자와 전문가 등 북한인의 러시아 입국도 금지했으며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주장에 따라 김정일 등 북한지도부를 겨냥해 포함시켰던 사치품의 대북수출도 금지. 러시아가 발표한 금지대상 사치품목에는 5만루블(1,950달러)이 넘는 귀금속이나 시계, 5,000루블 이상의 시계, 향수, 고가 모피제품과 브랜드 등 술, 300만루블이 넘는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고 이 신문은 전함.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초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5발 중 1발(대포동 2호 미사일)이 40여초 만에 공중 폭발, 실패로 끝나면서 파편이 러시아 영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면서 독자적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런 정책은 용인될 수 없으며, 역내 안보에도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함. 슬루츠키 부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숙하고 비효율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감안할 때 이런 지적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 그는 "이미 유엔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고 강조.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푸틴 대통령이 오는 7월 1, 2일 미국을 방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미사일 방어(MD)체제 등 양국간의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북핵문제와 WMD 확산 방지 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문화일보』, 5.31).

## KDI 북한경제리뷰

2007년 6월호

---

발행 / 2007년 6월 5일  
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발행인 / 한국개발연구원장 한정택  
편집위원 / 고일동, 김상기  
                  김상훈, 김은영

(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02-958-4354  
fax: 02-967-0186  
<http://www.kdi.re.kr>  
e-mail: [hmbkim@kdi.re.kr](mailto:hmbkim@kdi.re.kr)

© 한국개발연구원 2007